



혼동을 유발하는 상품(서비스) 간 관련성 연구

[2024년 특허청 정책연구과제]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혼동을 유발하는 상품(서비스) 간 견련성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8.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연구책임자 : 이 성 식

연구원 : 배 재 홍

이 승 준

이 동 호

목차

제1장 들어가며	1
제2장 스포츠 관련의류와 관련 상품	2
제1절 서론	2
제2절 스포츠 전문의류와 용구	5
Ⅰ. 개념정립	5
Ⅱ. 상품 거래 및 분류 현황	6
Ⅲ. 상품심사 현황	20
Ⅳ. 결론	30
제3절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38
Ⅰ. 개념정립	38
Ⅱ. 상품 거래 및 분류 현황	39
Ⅲ. 상품심사 현황	47
Ⅳ. 결론	58
제4절 종합 결론	59
제3장 수선·특수가공업과 관련 상품(서비스)	60
제1절 서론	60
제2절 수리·수선업 및 특수가공업	61
Ⅰ. 개념정립	61
Ⅱ. 상품 거래 및 표준산업분류 현황	62
Ⅲ. 상품심사 현황	76
제3절 결론	87
제4장 암호화폐 및 가상환경 상품명칭 연구	88
제5장 총평	108

제1장 들어가며

현재 상표심사 실무상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유사군코드를 참고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

상품의 유사여부는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나 유사군코드가 동일할 경우 유사한 표장으로 추정하고 반대로 유사군코드가 상이하면 유사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실정의 통합·전문화 등 산업계 변화와 다기능, 융복합 상품의 등장으로 상품 유사판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부합하는 거래실정 조사 및 상품 유사판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품 유사 혹은 견련성 파악에 혼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품(서비스)의 개념 정립, 사용실태 조사, 다른 분류체계 및 주요 국가의 심사기준 검토 등을 살펴보고, 암호화폐, 가상환경 등 신규융복합 관련 주요 명칭을 발굴하고 실제 출원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품 견련성 연구

둘째,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견련성 연구

셋째, 수선·특수가공업과 관련 상품(서비스) 견련성 연구

넷째, 암호화폐 및 가상환경 상품명칭 연구

본 연구를 통해 명확한 유사판단이 어려운 상품, 서비스의 견련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거래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사에 기여하고 또한 출원인의 명확한 권리범위 확인 및 편의 도모에 일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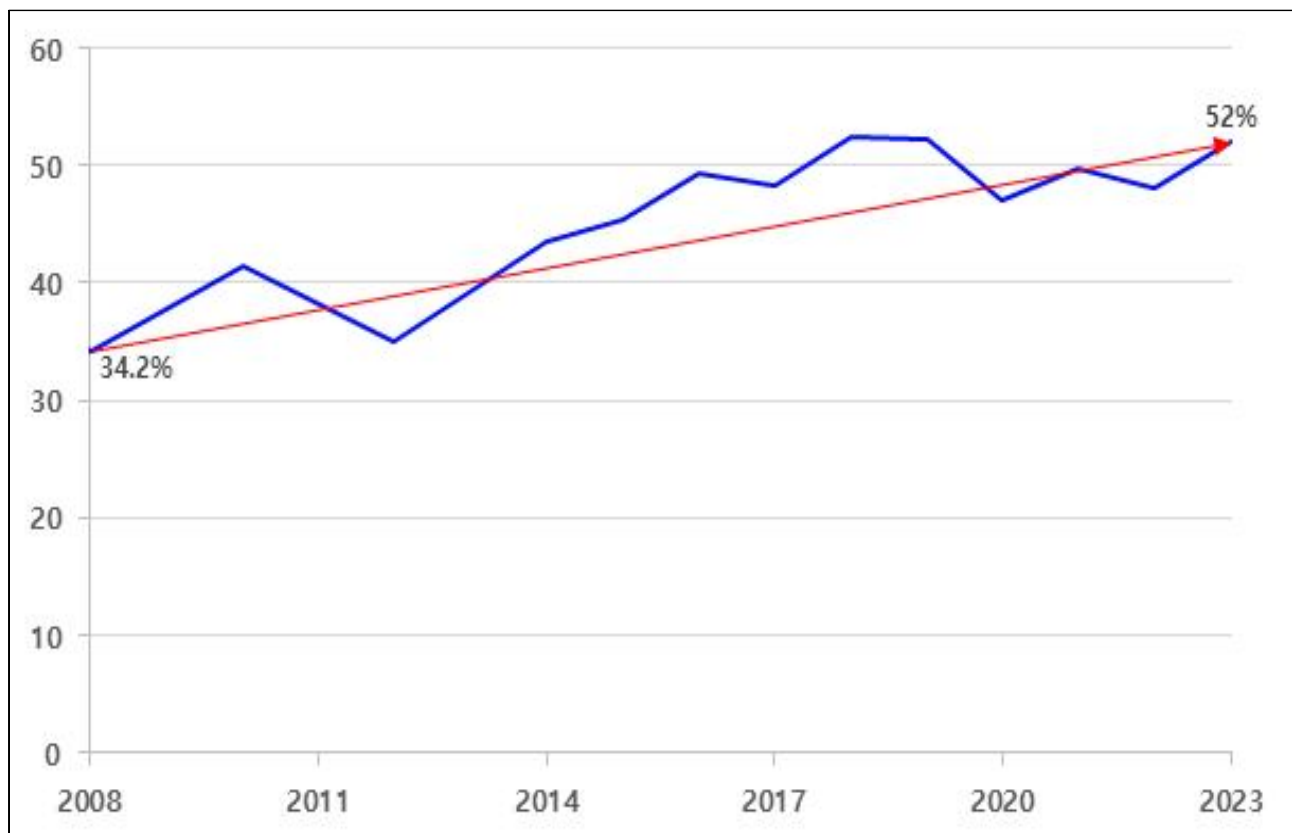
제2장 스포츠 관련의류와 관련 상품

제1절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스포츠(Sports)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끼리 승패를 겨루는 신체적 활동이나,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되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올림픽(Olympic)’, ‘아시안 게임(Asian Games)’, ‘세계선수권대회(World Championship)’등 스포츠대회는 주기별로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어 스포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사로잡는다. 우리나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은 2008년 34.2%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하여 2023년 기준 52%에 이르렀다.¹⁾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의 증가는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스포츠 관련 상품(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게한다.

〈우리나라 생활체육 참여율〉



1)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52>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스포츠 종목에 적합한 의류 또는 용구가 필요하다. 일례로, ‘테니스(Tennis)’를 하기 위해서는 ‘테니스복’, ‘트레이닝복’, ‘스포츠브라’, ‘테니스라켓’, ‘테니스공’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테니스복’, ‘트레이닝복’, ‘스포츠브라’, ‘테니스라켓’, ‘테니스공’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 대상, 즉, 지정상품이다.

〈현행 스포츠 관련 지정상품 분류 예시〉

통상의류	스포츠 관련 지정상품		
NICE 25	스포츠 관련 의류		스포츠용구
	스포츠 전문의류	스포츠 일반의류	
	NICE 25	NICE 25	NICE 06, 08, 09, 19, 27, 28, 20, 21, 22, 24
G430301 G430305, G450101, G450102, G4502, G4503, G450401, G4513	G430301	G430305	G430301
		+G450101	
		+G4503	
(예)의류	(예)테니스복	(예)트레이닝복 (예)스포츠브라	(예)테니스라켓, 테니스공

‘유사상품 심사기준(2024)’에 비추어 스포츠 관련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스포츠 관련 지정상품’은 크게 ‘스포츠 관련 의류’와 ‘스포츠용구’로 구분된다. 나아가, ‘스포츠 관련 의류’는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 일반의류’로 구분된다. ‘스포츠 전문의류’, ‘스포츠 일반의류’, ‘스포츠용구’는 각각이 속한 니스분류 및 유사군코드가 상이하나 ‘스포츠용 상품’임을 나타내는 유사군코드 ‘G4303’을 공유한다. 즉,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일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는 ‘G430301’ 유사군코드를 공유하여 견련 검색의 대상이 된다. ‘G430301’을 공유하는 상품 간의 관계는 비교대상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유사판단 특례 등 다소 복잡한 관계가 존재하여 상품심사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상품심사에 있어 ‘스포츠 관련 의류’는 ‘통상의류’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유사상품 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62호)’ 개정 전에는 ‘스포츠 관련의류’ 중 일부가 ‘통상의류’와 함께 분류되었고, 개정 후 ‘스포츠 관련의류’와 ‘통상의류’가 분리 되었으나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 일반의류’를 함께 보았다. 그리고 최근 ‘유사상품 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3호)’는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 일반의류’를 분리하고 ‘스포츠 일반의류’를 ‘통상의류’와 건련검색 가능하도록 유사군코드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연혁은 ‘스포츠 전문의류’, ‘스포츠 일반의류’ 및 ‘통상의류’의 거래실정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나 스포츠 관련 의류의 상품심사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2절 ‘스포츠 전문의류와 용구’와 제3절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를 주제로 비교대상 상품 간 상품속성 및 거래실정 관련 건련성을 연구·분석하여 상품심사에 작게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스포츠 전문의류와 용구’,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의 건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에 대한 개념정립을 시작으로, 오픈마켓 및 오프라인 조사, 타 업계 분류현황 조사, 상품 간 상표 중첩도 조사를 통해 거래실정 및 분류현황을 조사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와 타국의 상품심사 현황을 연구·분석하였다.

제2절 스포츠 전문의류와 용구

Ⅰ. 개념정립

본 연구에서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는 ‘유사상품 심사기준(2024)’의 ‘유사상품 심사기준(총칙) 제11조(유사판단의 특례) 제2항’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그러나 유사상품 심사기준에서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에 대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문헌과 유사상품 심사기준의 구조를 분석하여 그 개념을 살펴본다.

1. 사전적 개념

가. 스포츠 전문의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스포츠(Sports)’란 ‘경기규칙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끼리 승패를 겨루는 신체적 활동’,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일’ 정도로 정의되며 ‘일정한 운동 따위를 통하여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시키는 일. 또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운동’ 정도로 정의되는 ‘체육’과 그 개념이 유사하여 체육과 스포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아울러, ‘마인드 스포츠(바둑, 체스 등)’, ‘e스포츠(온라인 게임 등)’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스포츠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서 ‘체육’을 포함한다. 여기서 ‘체육’이란 국민체육기본법 제2조 제1호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전문(專門/顓門)’이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음 또는 그 분야’로 정의되고, ‘의류’란 ‘사람이 몸에 걸치는 여러 가지 옷의 총칭’으로 ‘의복’과 함께 사용된다.

따라서 ‘스포츠 전문의류’란 ‘운동 경기 및 신체 단련을 위한 신체활동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의류(의복)’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스포츠용구

‘용구(用具)’란 ‘무엇을 하거나 만드는 데 쓰는 여러 가지 도구’를 말한다. 즉, ‘스포츠용구’란 ‘운동 경기 및 신체 단련을 위한 신체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2. 상품심사 실무적 개념

가. 스포츠 전문의류

‘유사상품 심사기준(2024)’에서 ‘스포츠 전문의류’는 니스분류 제25류 G430301로 분류되고, ‘주로 전문가가 착용하는 스포츠 전용의복(스포츠용으로 용도가 한정된 의복)’, ‘특정 스포츠에서 착용하는 특수형태의 의복’, ‘위에 준하는 스포츠 전용 의복’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특정 스포츠로 용도 구분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나. 스포츠용구

‘유사상품 심사기준(2024)’에서 ‘스포츠용구’는 니스분류 제28류 G430301로 대표되고, ‘스포츠전용기구’, ‘주로 실외에서 근육운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용품’, ‘신체단련을 위한 장치나 기구’, ‘위에 준하는 스포츠 또는 레저용품’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개별 상품의 속성 따라 니스분류가 상이하다.

3. 소결

‘스포츠’의 사전적 개념은 ‘운동 경기 및 신체 단련을 위한 신체활동’ 정도이나, ‘바둑’, ‘게임’ 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등 그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 반면, 상품심사 실무적 관점에서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 용구’는 ‘유사상품 심사기준(2024)’에 한정되는 개념이며, 지정상품 분류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분류체계 내에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에 대한 상품심사 실무적 개념은 사전적 개념 대비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므로 상품심사 실무적 관점에 입각하여 연구한다.

II. 상품 거래 및 분류 현황

1. 상품 거래 현황

가. 오픈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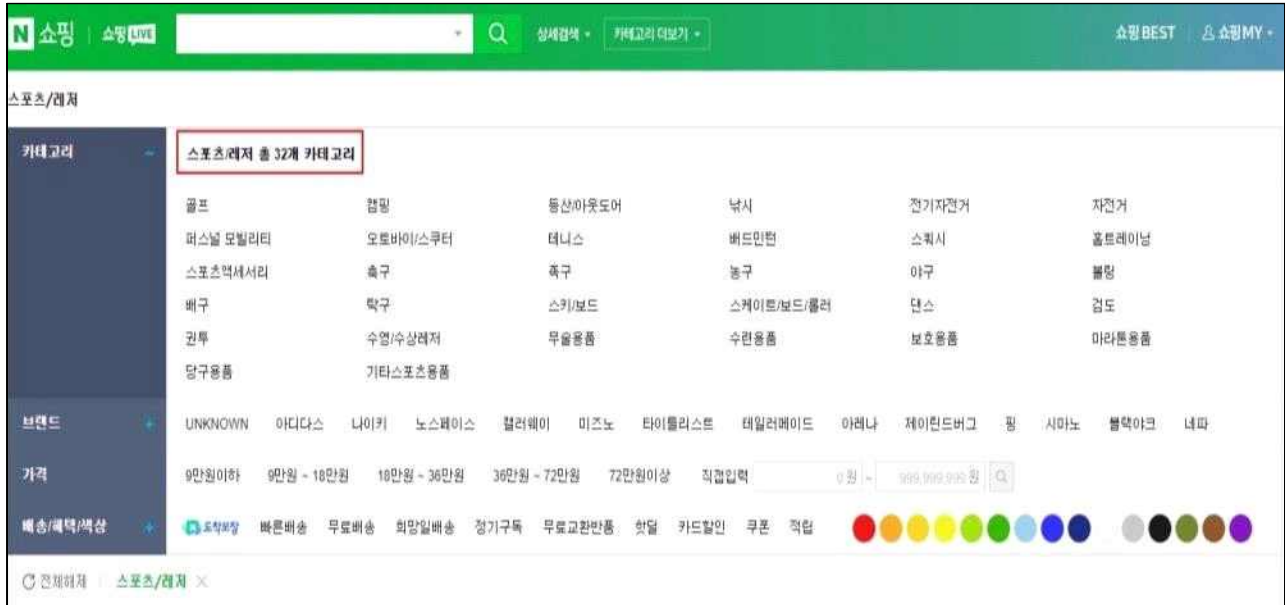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 매출이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다.²⁾ 이는 온라인 유통채널이 상품의 거래실정 분석에 있어 유의미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국내 대표 오픈마켓으로 일컬어지는 ‘네이버 쇼핑’, ‘쿠팡’, ‘지마켓’을 중심으로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의 거래실정을 살펴본다.

1) 네이버 쇼핑

2) “'온라인 쇼핑 전성시대'... 작년 온라인 유통 매출, 오프라인 제쳐”, 조선일보, 2024.01.30., <출처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1/30/2D7EG3AKQRHL5AV6GCFIM5XN24/>

‘스포츠/레저’ 관련 32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 스포츠에 대한 분류 하에 해당 종목에 대한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쇼핑-스포츠/레저〉



〈네이버 쇼핑-스포츠/레저-테니스〉



2) 쿠팡

‘스포츠/레저’ 관련 19개의 카테고리 구성되어 있고, 특정 스포츠에 대한 분류 내 해당 종목에 대한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스포츠/레저’ 분류 내에 특정 스포츠 분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스포츠 의류 카테고리가 존재하나, 특정 스포츠 간의 ‘스포츠용품’과 ‘스포츠 전문의류’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쿠팡-스포츠/레저-자전거(상)/남성스포츠의류(하)〉

패션의류/잡화 뷰티 출산/유아동 식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홈인테리어 가전디지털 스포츠/레저 자동차용품	캠핑전문관 홀트레이닝 수영/수상스포츠 골프 자전거 킥보드/스케이트 낚시 등산/아웃도어 스포츠신발 남성스포츠의류	자전거 보호장비 자전거 악세서리 자전거부품 자전거의류 자전거장갑/헬멧 자전거가방/수납 자전거신발 정비용품 거치대/트레이너
홈인테리어 가전디지털 스포츠/레저 자동차용품 도서/음반/DVD 완구/취미 문구/오피스 반려동물용품	낚시 등산/아웃도어 스포츠신발 남성스포츠의류 여성스포츠의류 유아스포츠의류 스포츠잡화 구기스포츠	등산의류 자전거의류 수영복/래쉬가드 스키/보드복 축구복 야구복 배드민턴복 더보기

〈쿠팡-스포츠/레저-수영/수상스포츠〉



3) 지마켓

‘스포츠’ 관련 7개의 카테고리 구성되어 있고, ‘스포츠 의류’와 특정 종목에 대한 카테고리가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여기서 ‘스포츠 의류’는 특정 종목을 위한 전문 의류가 아닌 ‘스포츠 일반의류’ 관련 상품의 카테고리로 확인된다.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카테고리 내 해당 종목에 대한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품’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지마켓-스포츠〉

브랜드패션	스포츠	건강	렌탈
패션의류·잡화·뷰티	스포츠의류/운동화	건강/의료용품	렌탈 서비스
유아동	휘트니스/수영	건강식품	상조
식품·생필품	구기/라켓		인터넷 가입
홈데코·문구·취미·반려	골프		
컴퓨터·디지털·가전	자전거/보드/기타레저		
	캠핑/낚시		
	등산/아웃도어		
스포츠·건강·렌탈			

〈지마켓-스포츠-구기/라켓〉

구기/라켓	찾으시는 ITEM명을 입력하세요.		ITEM		BRAND
	축구용품	야구용품	농구용품	배드민턴용품	볼링용품
구기스포츠	축구공	야구글러브	농구공	배드민턴라켓	볼링공
축구용품	축구화	야구화	농구화	셔틀콕	기타볼링용품
야구용품	풋살화	야구공	기타농구용품	배드민턴가방	볼링아대
야구의류/잡화	축구장갑	야구장갑	농구화	배드민턴그립	볼링가방
농구용품	축구인양/스티킹	야구배트	농구골대	배드민턴거트	볼링핀
배구용품	축구복	배팅연습용품	농구가방	배드민턴네트	볼링복
족구용품	축구조끼	야구헬멧	농구복	배드민턴복	볼링화
	경쟁이보호대	야구보호대		배드민턴화	볼링화
	꿈키퍼장갑	타자보호대	족구용품		
라켓스포츠	라인기	포수장비	족구공	테니스용품	당구용품
배드민턴용품	축구가방	야구가방	족구네트/지주	테니스라켓	당구대
	골대	기타야구용품	족구화	테니스공	당구공
테니스용품	축구연습용품		족구화	테니스가방	당구류
스쿼시용품	미식축구/택비공	야구의류/잡화		배드민턴그립	당구장갑
탁구용품	기타축구용품	야구복	탁구용품	테니스네트	당구초크
		야구점퍼	탁구라켓	라인기	
학교스포츠	스포츠잡화	야구언더셔츠	탁구대	기타테니스용품	
기타구기/라켓용품	스포츠우의/레인코트	야구모자	탁구로봇	테니스복	
	스포츠스카프/색워머	기타야구잡화	탁구러버	테니스화	
생활스포츠	스포츠마스크/세리클러비		탁구공	테니스화	
	스포츠귀마개		탁구네트	테니스거트	
볼링용품	깎칼/신발끈		탁구가방/케이스		
당구용품	고글/스포츠선글라스		탁구복	스쿼시용품	
	스포츠인양		탁구화	스쿼시라켓	
	스포츠토시		탁구화	스쿼시공	
스포츠잡화	스포츠헤어밴드/두건			스쿼시거트	
스포츠보호용품	스포츠목걸이/팔찌		배구용품	스쿼시보호안경	
	스포츠벨트		배구공	배드민턴그립	
	스포츠시계				
	스포츠장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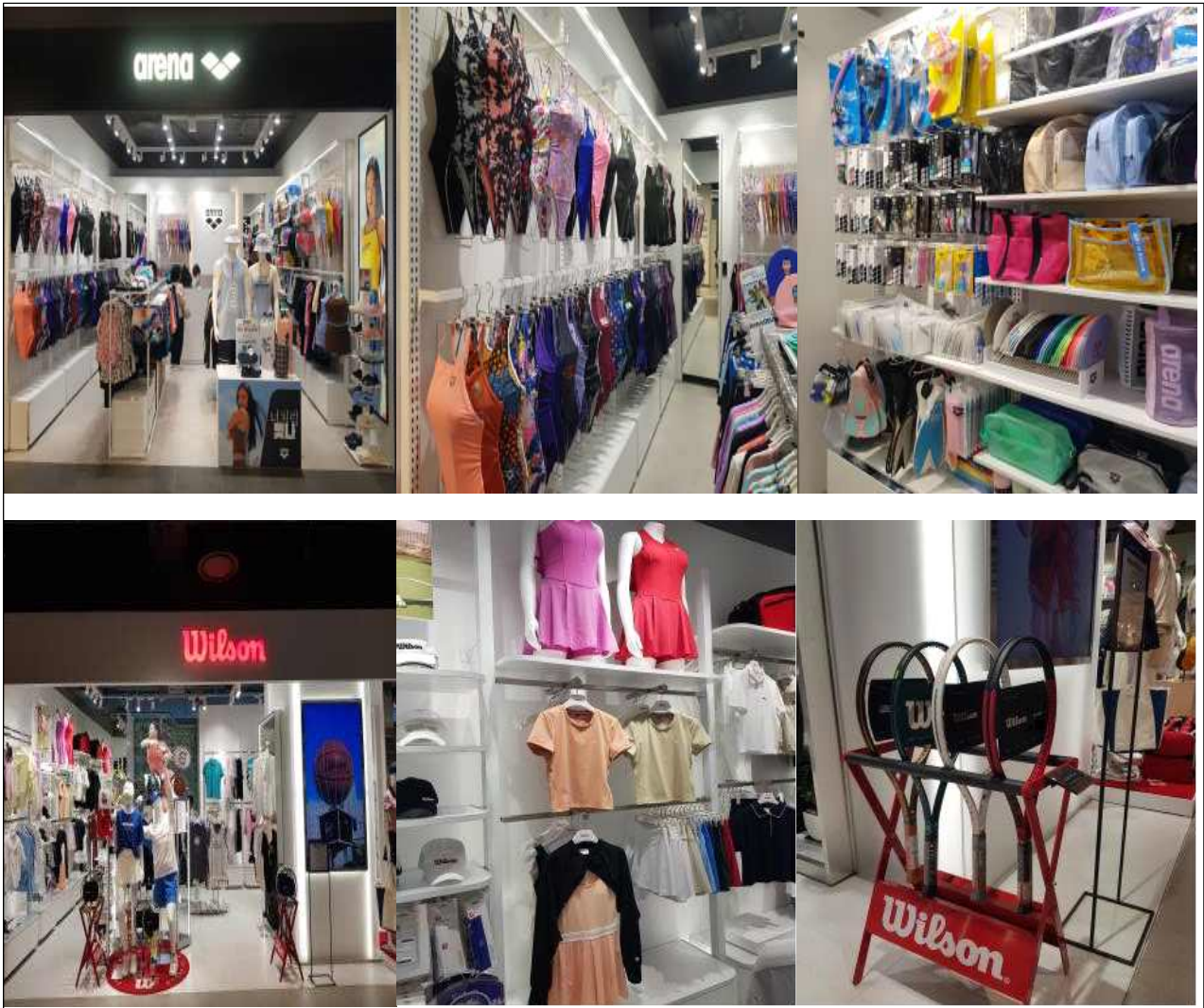
나. 오프라인 매장

〈신세계 백화점(대전) 층별 안내〉

RF하늘공원 7FCULTURE & SCIENCE 6FCULTURE & SCIENCE 5F베로나 스트리트, 식당가 4F스포츠,골프,아웃도어,리틀신세계(아동/유아), 란제리 3F여성,남성 2F해외패션, 멘즈 럭셔리 1F해외 유명브랜드,워치&주얼리,코스메틱 B1푸드마켓,생활	베이직스포츠 13 나이키042-607-8451 데상트042-607-8470 르꼬끄042-607-8415 아디다스042-607-8406 안다르042-607-8444 월슨042-607-8455 휠라042-607-8441
골프웨어 20 A.P.C.골프042-607-8693 WAAC(와 골프웨어)042-607-8446 던롭042-607-8428 마크앤로나042-607-8476 보스골프042-607-8786 아디다스 골프042-607-8493 어메이징크리042-607-8692	레저스포츠 18 K2042-607-8787 내셔널지오그래픽042-607-8433 노스페이스042-607-8793 브루튼042-607-8694 살로몬042-607-8468 아이더042-607-8432 컬럼비아042-607-8435 코오롱스포츠042-607-8443

오프라인 매장은 상품의 속성과 판매 전략에 따라 브랜드를 편성배치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관련 상품’은 ‘의류’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골프, 레저/아웃도어’를 별도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고, 이외 스포츠는 통합하여 관리·안내 하는 경향이 있다.

〈스포츠 전문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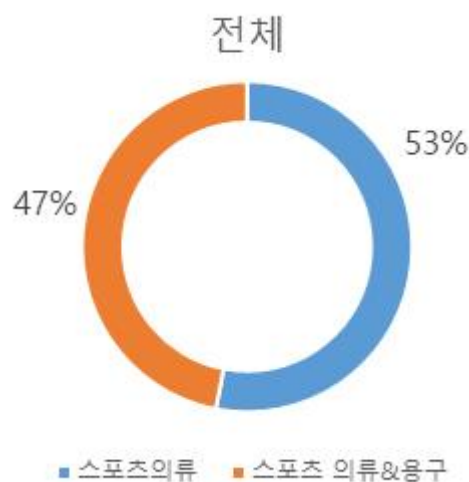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현장조사 결과 ‘스포츠 관련 상품’은 ‘스포츠 관련 의류’를 중심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스포츠용품’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특정 ‘스포츠 용구 전문점’ 정도이다. 다만,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품’을 함께 취급하는 매장도 확인된다.

다. 상표 중첩도 조사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으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의 ‘자타상품 식별’ 기능은 시장에서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동종의 상품은 동일한 제조·판매자를 출처로 한다는 인식을 준다. 여기에 산업계의 브랜드 통일화 경향 및 사업 확장성을 더하여 고려하였을 때 상품간 상표 중첩도는 제조·판매자 등 견련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즉, ‘상표 중첩도 조사’는 상품의 자체·활성시장을 통해 상품 간 견련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 조사는 ‘스포츠 산업백서’³⁾에서 집계된 2014-2018 종목별 스포츠 용품업 매출액 상위 10개 종목과 니스분류 제25류 내 ‘스포츠 전문의류(G430301), 등산복(G430301, G430302), 골프복(G430301, G430303), 낚시복(G430301, G4304)’을 고려한 12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오픈마켓 대표격인 ‘네이버 쇼핑’의 ‘대분류(스포츠) > 중분류(특정 스포츠) > 소분류(의류/용구 등)’에서 등록상품 수를 기준으로 추출된 ‘브랜드’ 명칭을 데이터로 사용한다.

〈스포츠 전문의류-용구 간 상표 중첩도〉



‘스포츠 전문의류’에 사용되는 약 920개의 상표 중 47%가 ‘스포츠용구’에 사용되는 상표와 중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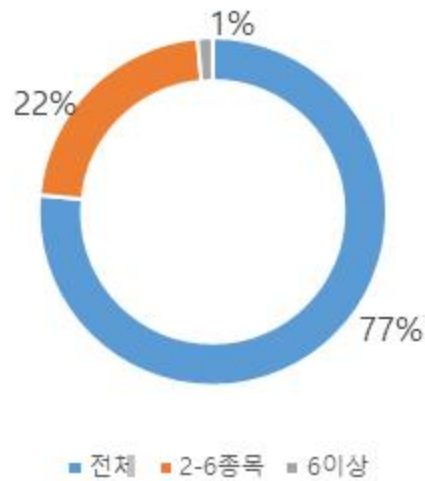
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백서』, 2022, 72-76면.

〈특정 스포츠 전문의류-용구 간 상표 중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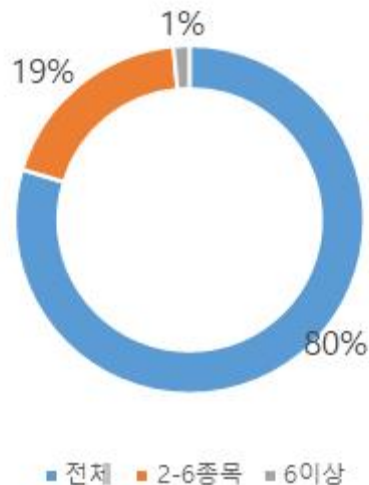
특정 ‘스포츠 전문의류’ 상표를 기준으로 ‘스포츠용품’와의 상표 중첩도가 50% 이상으로 조사된 종목은 ①골프(60%), ②야구(53%), ③배드민턴(52%), ④등산/아웃도어(52%)) 4가지 종목이 조사되었으며, 40-49% 구간은 ⑤축구(45%), ⑥낚시(43.31), ⑦탁구(41%) 3종목으로 조사되었다.

〈스포츠 전문의류 간 상표 중첩도〉



‘스포츠 전문의류’ 관련 12개 종목의 약 920개의 상표 중 22%의 상표가 2종목 이상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6종목 이상에 사용되는 상표는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중첩도 상위 브랜드 분석결과 ‘나이키’, ‘아디다스’, ‘미즈노’, ‘언더아머’, ‘데상트’, ‘푸마’, ‘프로스펙스’, ‘월슨’, ‘뉴발란스’, ‘아식스’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가 포진하고 있다.

〈스포츠용품 간 상표 중첩도〉



‘스포츠용구’ 관련 12개 종목의 약 2,069개의 상표 중 19%의 상표가 2종목 이상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6종목 이상에 사용되는 상표는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중첩도 상위 브랜드 분석결과 ‘나이키’, ‘아디다스’, ‘미즈노’, ‘월슨’, ‘힐라’, ‘아식스’, ‘언더아머’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가 포진하고 있다.

2. 타 업계 분류 현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단위(사업체, 기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통계목적의 분류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스포츠 관련 의류〉

스포츠 관련 의류
C 제조업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봉제의복 제조업
1419.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2.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4.생활용품 도매업
4641.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46413.남녀용 겹옷 및 셔츠 도매업
47.소매업; 자동차 제외
474.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41.의복 소매업
47419.기타 의복 소매업

4) 통계청, 한국 표준산업분류(11차), 202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스포츠용구〉

스포츠용구
C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3.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9.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4.생활용품 도매업
4646.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46464.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7.소매업; 자동차 제외
476.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4763.운동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47631.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특정 스포츠’와 무관하게, ‘스포츠 전문의류’는 ‘의류’의 하위 카테고리에 위치하고, ‘스포츠용구’는 그 자체가 ‘스포츠’를 위한 ‘용구’로서 별도의 분류 카테고리를 가진다.

나.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한 체육(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활동을 지원하는 제조업, 건설업, 관련 서비스업(시설업, 기타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라는 재화를 수동적 여흥거리로 제공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유통하는 산업(스포츠 정보 제공업, 스포츠 이벤트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스포츠 산업분류는 스포츠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하여 산업특수분류체계로 분리되었으며, 스포츠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스포츠 관련 의류〉

스포츠 관련 의류
2. 스포츠 용품업
201.운동 및 경기용품업
20102.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2010201.스포츠 의류 제조업
202.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20201.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020103.스포츠 의류 도매업
20202.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2020203.스포츠 의류 소매업
2020206.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스포츠용구〉

스포츠용구
2.스포츠 용품업
201.운동 및 경기용품업
20101.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010101.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2010102.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2010199.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02.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20201.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2020101.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
20202.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2020201.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2020206.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는 ‘의류’와 ‘용구’ 이하에 용도(스포츠)를 반영하여 분류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와 달리, ‘스포츠’라는 대전제 하에 ‘스포츠 의류’와 ‘스포츠용구’를 분류하고 있다.

3. 소결

지금까지 상품 거래와 분류현황을 살펴보았다. 오픈마켓 현황은 ‘의류’와 ‘용구’ 하에 ‘스포츠’가 위치하는 것이 아닌, 대전제 ‘스포츠’ 하에 ‘특정 스포츠’가 위치하고 이에 따라 ‘의류’와 ‘용구’가 위치한다.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상품 거래 현황은 ‘스포츠 전문의류’를 주로 취급하거나, ‘스포츠용구’와 ‘스포츠 전문의류’를 함께 취급하는 실태가 확인되었다.

상표 중첩도 조사는 개별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정량적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조사 결과 ‘스포츠 전문의류’에 사용되는 상표 중 47%가 ‘스포츠용구’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유사상품 심사기준에서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 간 유사성을 인정한 ‘골프’, ‘등산/아웃도어’, ‘낚시’가 각각 60%, 52%, 43%의 중첩도를 보인다. ‘스포츠 전문의류’ 간 상표 중첩도는 약 23%로 조사되었고, ‘스포츠용구’ 간 상표 중첩도는 약 20%로 조사되었다. 즉, ‘스포츠 관련 상품’의 상표권자들은 ‘의류’ 또는 ‘용구’ 중심의 시장 보다 특화된 ‘특정 스포츠’ 시장을 중심으로 상거래활동을 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특정 스포츠’ 관련 ‘전문의류’와 ‘용구’를 함께 취급하는 상표권자들이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타 업계 분류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별개로 스포츠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특수분류로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가 존재하는 점이 주목된다.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는 ‘의류’나 ‘용구’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달리 스포츠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스포츠’라는 대전제 하에 ‘의류’와 ‘용구’를 분류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 간의 견련성을 살펴보면, 양 상품은 ‘의류’와 ‘용구’로서 상품 자체의 속성이 상이하나 ‘특정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거래실정(제조·판매자, 유통경로, 수요자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 간 견련성 판단에 있어서 ‘의류’와 ‘용구’라는 본질적 속성보다 ‘특정 스포츠’에 따른 거래실정을 주된 요소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상품심사 현황

1. 우리나라

〈우리나라 스포츠 전문의류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상품의 범위
25	G430301	수영복, 승마바지, 체조복, 사이클복, 축구복, 검도복, 테니스복, 펜싱복 등	○ 주로 전문가가 착용하는 스포츠 전용의복(스포츠용으로 용도가 한정된 의복) ○ 특정 스포츠에서 착용하는 특수형태의 의복 ○ 위에 준하는 스포츠 전용 의복
25	G430301 G430302	등산복 등	○ 등산시 입는 의류
25	G430301 G430303	골프복 등	○ 골프활동시 입는 의류
25	G430301 G4304	낚시복 등	○ 낚시할 때 입는 의류

〈우리나라 스포츠용구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상품의 범위
6	G430301	금속제 다이빙 보드 등	-
8	G430301	스키용 스크레이퍼 등	-
9	G430301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 등	○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클립 ○ 스포츠용 호각 ○ 제9류에 속하는 스포츠용품
19	G430301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등	-
27	G430301	스포츠용 매트 등	○ 주로 스포츠 전용으로 쓰이는 매트류
28	G430301	신체단련기구, 신체재활기구, 검도용품, 볼링용품, 복싱용품, 서핑용품, 야구용품 등	○ 스포츠전용기구 ○ 주로 실외에서 근육운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용품 ○ 신체단련을 위한 장치나 기구 ○ 위에 준하는 스포츠 또는 레저용품

6	G430302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	○금속제 텐트팩, 등산용 아이젠 ○등산용으로 쓰이는 소형금속(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
8	G430302	등산용 피켈(얼음도끼)	-
20	G430302	비금속제 텐트 팩	○비금속제 텐트 팩 ○제20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주로 스포츠용으로 쓰이는 물품
21	G430302	코펠	-
22	G430302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주로 스포츠와 레저 목적에 사용하는 텐트(천막)
24	G430302	침낭	○야외에서 잠잘 때 쓰는 보온용 자루
28	G430302	등산용 안전장착대, 등강기(등산장비)	-
28	G430303	골프공, 골프채,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채, 골프가방 ○위에 준하는 골프용품
8	G430304	골프벙커 정리용 씨레	-

‘스포츠 전문의류’는 특정 스포츠 용도로 구분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대표하는 개념이므로 일상복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통상의류와 거래실정이 중복되는 ‘스포츠 일반의류’와 구분된다. ‘스포츠 전문의류’의 상품범위는 ‘주로 전문가가 착용하는 스포츠 전용의복(스포츠 용으로 용도가 한정된 의복)’, ‘특정 스포츠에서 착용하는 특수형태의 의복’, ‘위에 준하는 스포츠 전용 의복’을 포함한다. 따라서 ‘특정 스포츠’에 속한다는 객관적인 관념이 존재하는 의류명칭이거나 ‘특정 스포츠+의류’로 구성된 상품 명칭은 ‘스포츠 전문의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G430301로 분류된다. 아울러, 특정 스포츠(등산, 골프 등)에 따라 상품의 거래실정이 상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의 유사군코드를 부여하여 해당 스포츠용구와 견련검색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용구’ 범주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은 특정 또는 일반 스포츠 용도에 속한다는 객관적인 관념이 존재하는 상품명칭이거나 ‘스포츠+용구’로 구성되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니스분류가 상이하고 G430301로 분류된다. 단, 특정 스포츠(등산, 골프 등)에 따라 상품의 거래실정이 상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지번호를 달리하는 유사군코드를 부여하여 해당 스포츠 전문의류와 견련검색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용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니스분류를 달리하고 있으나, ‘스포츠용구’를 대표하는 니스분류는 제28류 이므로 이후 ‘스포츠용구’ 상품심사 현황은 니스분류 제28류를 기준으로 한다.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는 동일한 유사군코드(G430301)을 공유하나, 유사군 코드를 공유하는 여타 지정상품과 달리 ‘유사판단의 특례(유사상품심사기준 제11조)’의 적용을 받는다. ‘서비스상표 심사 세부 처리지침(2024)’의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 관련 심사지침에 따르면, 상품 유사판단에 있어서 ‘스포츠 전문의류’ 간에는 특정 스포츠(예: 농구, 스키, 수영 등)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특정 스포츠에 특화된 전문의류는 해당 스포츠 용구와 유사대비 한다. 스포츠 전문의류는 스포츠용구와 유사로 판단되어 동일 유사군코드 G430301로 분류되나, 모든 스포츠의류는 거래실정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유사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일본

〈일본 스포츠 전문의류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25	24C01	運動用特殊衣服 (「水上スポーツ用特殊衣服」を除く。) (운동용 특수 의류('수상 스포츠용 특수 의류' 제외)) グラントコート (스포츠 오버유니폼) スキー競技用衣服 (경기용 스키복)
25	17A01 17A02 24C01	運動用及び運動競技用シング (스포츠용 싱글렛) ジャージー製運動用衣服及び (스포츠용 저지) 体操用衣服及び体操競技用衣服 (체조복) ...
25	17A01 24C01	制服及びユニフォーム (유니폼)
25	17A02 24C01	ラッシュガード (래시가드)
25	17A04 24C01	運転用手袋 (운전용 장갑) 吸汗性ストッキング及び吸汗性 (땀흡수 스타킹)

〈일본 스포츠용품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28	24C01 24C03 24C04	運動用具 (스포츠 장비)
28	24C01	運動用具 (登山用・サーフィン用・水上スキー用・スキューバダイ ビング用のものを除く。) (등산, 서핑, 수상스키, 스쿠버 다이빙을 제외한 스포츠 장비) 球技用具 (구기 종목 용구) (1) 野球用具 (야구 용구) (2) ソフトボール用具 (소프트볼 용구) ~ (19) ラクロス用具 (라크로스 용구)
28	24C03	登山用ハーネス (등산용 안전장착대)
28	24C04	サーフィン用・水上スキー用・スキューバダイビング用運動用具... (서핑, 수상스키, 스쿠버 다이빙용 스포츠 장비)

일본의 상품분류 체계에서 ‘스포츠 관련의류’ 코드부여는 ‘스포츠’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상품에 24C01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스포츠 관련의류’ 간 견련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4C01 코드만이 부여된 ‘스포츠 관련 의류’가 존재하나, 우리 상품심사 기준의 ‘스포츠 전문의류(G430301)’와 동일한 역할 또는 개념이라 단정할 수 없다. ‘스포츠용품’의 분류체계는 ‘스포츠(등산, 서핑, 워터스키 및 스쿠버 다이빙 제외)(24C01), ‘등산(24C03), ‘서핑, 워터스키 및 스쿠버 다이빙(24C04)’로 구분되어 있어서 24C01이 부여된 ‘스포츠 관련의류’와 ‘스포츠용품’ 간에 견련검색이 가능하다.

3. 중국

〈중국 스포츠 전문의류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25	2503	特种运动服装 (특종 운동 복장) 骑自行车服装 (사이클복) 游泳衣 (수영복) 体操服 (체조복) (杂技、舞蹈等演员穿的) 紧身连衣裤 (리어타드)

〈중국 스포츠용구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28	2804	球类及器材 (구기류와 기자재) 体育活动用球 (경기용 공) 投球机 (공투척기) 球拍 (라켓)
28	2805	健身器材 (헬스기구) 锻炼身体器械 (신체단련기구) 锻炼身体肌肉器械 (보디빌딩기구) 锻炼用固定自行车滚轴 (운동용 고정식 자전거롤러)
28	2806	射箭运动器材 (양궁 장비) 箭弓 (양궁) 射箭用器具 (양궁 용구)
28	2807	体操、举重、田径、冰雪及属于本类的其他运动器材 (체조, 역도, 육상경기, 빙설 및 이 부류에 속하는 기타 운동기구) 体操器械 (체조용구) 上升器(登山设备) (등강기(등산장비)) 冲浪板 (서핑보드) 滑雪板 (스키)

중국 상품분류 체계에서 ‘스포츠 관련 의류’는 2503으로 분류되고, ‘스포츠용구’는 ‘구기류와 기자재(2804)’, ‘헬스기구(2805)’, ‘양궁 장비(2806)’, ‘체조, 역도, 육상결기, 빙설 및 이 부류에 속하는 기타 운동기구(2807)’ 등으로 나누어 분류된다. ‘스포츠 관련 의류’와 ‘스포츠용구’ 간 유사군코드를 공유하지 않고, 양 상품 간 견련검색에 대한 지침상 별도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4. 대만

〈대만 스포츠 전문의류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25	250102	西服 ; 大衣 ; 外套 ; 運動服 (양복; 외투; 오버코트; 운동복) 體操服 (체조복) 自行車騎士服 (사이클복)

〈대만 스포츠용구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28	2802	運動用具 (스포츠 용품) 體操器具 (체조용구) 高爾夫球桿 (골프채) 滑雪板 (스키)
28	2809	游泳用浮物 (수영용 부유물) 游泳踢水板 (수영용 킥보드) 游泳池用充氣遊戲器具 (수영장용 공기팽창식 게임용품)

대만 상품분류 체계에서 ‘스포츠 관련의류’는 ‘통상의류’와 함께 250102으로 분류된다. ‘스포츠용구’는 ‘스포츠용품(2802)’, ‘수영용 부유물(2809)’ 등으로 나누어 분류된다. ‘스포츠 관련의류’와 ‘스포츠용구’ 간 유사군코드를 공유하지 않고, 양 상품 간 견련검색에 대한 지침상 별도의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5. 미국

미국은 유사군코드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로서 전류검색을 원칙으로 하나, 상품(서비스) 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분류를 편성한 “Coordinated class”를 제공하여 견련검색을 권장한다. 예컨대, 제25류(의류)는 제14류(장신구), 제18류(핸드백을 포함한 가죽제품), 제35류(소매업을 포함하는 광고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와 견련검색이 권장된다. 그 이유는, 제25류(의류)를 제공하는 기업은 제14류, 제18류, 제35류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는 제25류 의류를 판매하는 자가 제14류, 제18류 상품을 같이 판매하거나 제35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Coordinated class : 제25류, 제28류〉

025 Clothing	
International classes	U.S. classes
014 Jewelry	A Goods certification marks
018 Leather goods	B Services certification marks
024 Fabrics	200 Collective membership marks
035 Advertising and business services	
042 Computer, scientific, and legal services	

028 Toys and sporting goods	
International classes	U.S. classes
009 Electrical and scientific apparatus	A Goods certification marks
016 Paper goods and printed matter	B Services certification marks
020 Furniture and articles not otherwise classified	200 Collective membership marks
025 Clothing	
035 Advertising and business services	
041 Education and entertainment services	
042 Computer, scientific, and legal services	

“Coordinated class”에 따르면, ‘스포츠 관련 의류’를 포함하는 국제분류 제25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분류는 ‘제14, 18, 24, 35, 42류’가 있으며 ‘스포츠용구’를 포함하는 국제분류 제28류는 제외된다. 그러나, 제28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국제분류 중 제25류가 포함되어 건련검색이 권장된다.

6.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상품(서비스) 간 유사성 평가를 위한 “Similarity Tool”을 제공한다. “Similarity Tool”은 유럽사법재판소의 CANON 판결에 따라 비교대상 상품 간의 ①성질(Nature), ②용도/목적(Purpose), ③사용 방식(Methods of use), ④보완 상품(Complementary goods), ⑤경쟁유무(Goods/Services in competition), ⑥유통채널(Distribution Channels), ⑦관계 대중(Relevant public), ⑧생산자(Producer/Provider), ⑨기타(OTHER)를 분석하여, ❶동일(Identical), ❷높은 유사도(High Degree of Similarity), ❸유사(Similar), ❹낮은 유사도(Low Degree of Similarity), ❺비유사(Dissimilar)로 유사도(Degree of Similarity)를 나타낸다.

〈EUIPO Similarity Tool : 스포츠 관련의류-용구〉

N C	스포츠 관련의류	유사도	N C	스포츠용구
25	Sportswear (스포츠의류)	Low similar	28	Sporting articles and equipment (스포츠용구 및 장비)
25	Sportswear (스포츠의류)	Low similar	28	Appliances for gymnastics (체조용구)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25	Articles of sports clothing(운동복) Clothing for sports(운동복) Athletic clothing(운동복) Sports clothing(운동복) Clothes for sport(운동복) Sports wear(스포츠의류) Clothes for sports(운동복) Sports garments(운동복)	Low similar	28	Gymnastic articles(체조용구) Gymnastics (Appliances for -)(체조용구) Gymnastic apparatus(체조용구)

“Similarity Tool”에 따르면, ‘스포츠 관련의류’와 ‘스포츠용구’는 ‘성질(nature)’은 상이하나 ‘생산자(Producer)’, ‘관계 대중(Relevant public)’, ‘유통채널(Distribution Channels)’의 유사성이 인정되어 ‘낮은 유사도(Low similar)’로 평가된다.

7. 소결

〈국가별 스포츠 관련의류-스포츠용구 간 견련검색 여부〉

국가	스포츠 관련의류와 스포츠용구 간 견련검색	해설
우리나라	△	스포츠 전문의류-스포츠용구 = ○ 스포츠 일반의류-스포츠용구 = X
일본	○	스포츠 관련의류-스포츠용구 간 유사군코드 (24C01)를 공유하여 견련검색 가능
중국	X	스포츠 관련의류-스포츠용구 간 유사군코드를 공유한다 보기 어렵고, 양자 간 견련검색에 대한 지침을 찾아보기 어려움
대만	X	스포츠 관련의류-스포츠용구 간 유사군코드를 공유한다 보기 어렵고, 양자 간 견련검색에 대한 지침을 찾아보기 어려움
미국	△	Coordinated class에 따르면, 니스분류 제25류 상표 출원시 제28류는 견련검색 대상에서 제외되나, 제28류 상표 출원시 제25류 견련검색이 권장됨
EUIPO	△	Similarity Tool에 따르면, 스포츠 관련 의류와 스포츠용구 간에는 생산자, 유통채널의 유사성은 인정되나 상품 자체의 성질이 상이하여 인하여 ‘낮은 유사도(Low similar)’로 평가됨

유사군코드 활용 국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와 유사군코드 비활용 국가 ‘미국, EUIPO’을 중심으로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품’ 간 상품심사 현황을 살펴보았다.

각국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품’ 간 상품심사 체계는 차이가 있다. ‘스포츠 관련 의류’를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 일반의류’로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중국, 대만’을 제외하면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품’을 지정 상품으로 하는 상표검색 시 양 상품 간의 견련검색은 필요조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복수유사군 활용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하다. 그러나, ‘스포츠 관련의류’를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 일반의류’로 구분하여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품’에만 유사군코드(G430301)를 공유하게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스포츠 관련상품’에 유사군코드(24C01)를 공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전문의류’, ‘스포츠 일반의류’, ‘스포츠용품’ 간 견련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양국의 상품심사에 있어 우리나라는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품’ 간 강한 견련성을 요구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견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일본 유사군코드 비교 : 스포츠 관련의류-용품〉

	구분		류	우리나라 (특허청예규 제133호, 2023.12.27)		일본
				개정 전	개정 후	
①	스포츠 용품		28	G430301	G430301	24C01
②	스포츠 관련의류	스포츠 전용의류	25	G430301	G430301	24C01 또는 24C01 +통상의류
③		스포츠 일반의류	25	G430301	G430305 +통상의류	
④	통상의류		25	통상의류	통상의류	통상의류

Ⅳ. 결론

지금까지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 간의 견련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 개념은 그 위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상품심사 실무적 관점으로 정립하였다.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의 오픈마켓 거래실태 확인결과 ‘의류’와 ‘용구’라는 상품의 본질적 속성에 따른 분류가 아닌 ‘특정 스포츠’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양 상품의 자체·활성시장(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진행한 상표 중첩도 조사 결과 ‘의류’와 ‘용구’라는 본질에 따른 상표 중첩도 뿐만 아니라 ‘특정 스포츠’를 기준으로 ‘의류’와 ‘용구’를 함께 취급하는 상표 중첩도 역시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를 본질에 따라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달리,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는 스포츠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스포츠’를 대전제로 분류하고 있다.

각국의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 간 상품심사는 그 체계가 상이하나, ‘중국, 대만’을 제외하면 양 상품간의 견련검색을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 간의 견련성을 살펴보면, 양 상품은 ‘의류’와 ‘용구’라는 본질적 속성이 상이하나 ‘특정 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거래실태(제조·판매자, 유통경로, 수요자 등) 측면에서 유사하다. 우리나라 상품심사 체계는 이를 염두에 두고 양 상품을 동일한 유사군코드(G430301)로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한 유사군을 공유하는 여타 지정상품들과 다르게 ‘유사판단의 특례’로 규정하여 심사기준 적용에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따라서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한 개별·구체적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앞서 검토한 양 상품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에 대한 ‘유사판단의 특례’ 규정은 니스분류 제25류(의류)와 제28류(용구) 상품 간 본질적 속성의 유사성이 아닌, ‘특정 스포츠’에 따른 거래실태의 유사성에 무게를 두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시명칭 기준 스포츠별 전문의류 및 용구 예시〉

스포츠	스포츠 전문의류	스포츠용구
검도	검도복	검도용 가슴받이 검도용 동구 검도용 마스크 검도용 면 검도용 목도 검도용 장갑 검도용 죽도 검도호구
스키	경기용 스키복 스키 재킷 스키복 스키용 바지 스키용 장갑	스키 스키 고정장치 스키 케이스 스키날 스키바인딩용 커버 스키보드 스키스틱 스키용 가방 스키용 덮개 스키용 맞춤형 보호덮개 스키용 바닥덮개 스키용 브레이크 스키틀 스키폴 실 스킨(스키용 커버링)
수영	남성용 및 숙녀용 수영복 남성용 수영복 브라컵이 있는 수영복 비키니 수영모자 수영복 수영팬츠 아동용 수영복 유아용 수영복 여성용 수영복	수영 경기용 레인 수영벨트 수영보조기구 수영용 링 수영용 물갈퀴 장갑 수영용 보드 수영용 스타팅 블록 수영용 오리발 수영용 장갑 수영용 킥보드

	래시가드 모노키니 탱키니	수영용 팔에 끼는 부낭 수영용 폼제 부낭 수영장용 공기주입식 플로트 수영재킷 팽창식 수영용 부낭 수영용 부낭
농구	농구복 농구팬츠	농구공 농구용 골대 농구용 네트 농구용 백보드 농구용 손가락 보호구 농구용 손가락 보호대
럭비	럭비용 반바지 럭비용 셔츠	럭비공
미식축구	미식축구용 빙	미식축구용 블로킹 슬레드 미식축구공 미식축구용 거들 미식축구용 골대 미식축구용 다리패드 미식축구용 몸체보호구 미식축구용 무릎패드 미식축구용 어깨패드 미식축구용 장갑 미식축구용 팔꿈치패드 미식축구용 흉부패드
무술	혼합무술 또는 격투용 파이트쇼츠 격투기 유니폼 무술용 유니폼	무술용 정강이 보호패드 무술용 킥패드 무술용 포커스패드 무술훈련용 장비
배구	배구복	배구 기동용 안전패드 배구공 배구용 기동 배구용 네트 배구용 네트안테나

		배구장비
배드민턴	배드민턴복	배드민턴 기동용 안전패드 배드민턴공 배드민턴네트 배드민턴라켓 배드민턴라켓용 그립 배드민턴라켓용 성형커버 배드민턴라켓용 헤드커버 배드민턴라켓줄 배드민턴세트 배드민턴용 기둥 배드민턴장비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용 라켓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용 라켓 손잡이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용 라켓 케이스
복싱	복싱 쇼츠	복싱용 붕대 복싱용 글러브 복싱용 링 복싱용 미트 복싱용 샌드백 복싱용 샌드용 회전고리 복싱용 펀칭볼 복싱용 포커스패드
서핑	서핑복	서핑보드 서핑보드용 가방 서핑보드용 끈 서핑보드용 트랙션패드 서핑보드용 핀 스킴보드
스노보드	스노보드 바지 스노보드 재킷 스노보드복 스노보드용 슈트	스노보드 스노보드용 가방 스노보드용 덱 스노보드용 마찰정지용 패드

	스노보드용 장갑	스노보드용 바인딩 스노보드용 보호대
스케이트 보드	스케이트보드바지 스케이트보드복 스케이트복	스케이트보드용 운동용 보호 팔꿈치 패드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용 가방 스케이트보드용 그립테이프 스케이트보드용 데크 스케이트보드용 라이저패드 스케이트보드용 레일 스케이트보드용 마찰정지용 패드 스케이트보드용 바퀴 스케이트보드용 보호대 스케이트보드용 운동용 보호 무릎패 드 스케이트보드용 운동용 보호 손목패 드 스케이트보드용 운동용 보호 팔패드 스케이트보드용 트랙 스케이트보드용 패들
아이스 하키	아이스하키복	아이스하키 골키퍼용 패드 아이스하키스틱 아이스하키스틱용 가방 아이스하키스틱용 그립 테이프 아이스하키스틱용 날 아이스하키스틱용 샤프트 아이스하키용 골네트 아이스하키용 골대 아이스하키용 목보호대 아이스하키용 스케이트 아이스하키용 퍽
야구	야구 유니폼 야구복	고무제 야구공 야구 및 소프트볼용 러빙머드 야구경기용 아이패치 야구공

		야구공 투척기 야구글러브 야구배트용 가방 야구배트용 그립테이프 야구배트케이스 야구배팅용 장갑 야구배팅용 티 야구배팅케이지용 네트 야구용 마스크 야구용 미트 야구용 배트 야구용 베이스 야구용 투수판 야구용 팔꿈치보호대 야구용 포수마스크 야구용 포수장갑 야구용 흉부보호대 야구피칭용 스크린 투구분석 기능이 있는 야구공 투수판 포수마스크 포수용 장갑
에어로빅	에어로빅복	에어로빅용 디딤대 에어로빅용 스텝머신
요가	요가셔츠 요가용 바지	요가 그네 요가 스트랩 요가 탄력 밴드 요가밴드 요가연습용 베개 요가연습용 볼스터 요가연습용 아이필로우 요가용 블록 요가용 짐볼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복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가방 인라인스케이트용 휠
체조	체조복	체조 훈련 의자 체조용 도약판 체조용 뒹툼 체조용 링 체조용 안마 체조용 이단평행봉 체조용 철봉 체조용 평균대 체조용 평행봉 체조용구
축구	축구복	축구골대 축구공 축구용 니패드 축구용 장갑 풋볼 또는 축구골대
태권도	태권도복	태권도 호구 태권도용 미트
테니스	테니스반바지 테니스복 테니스용 스커트	테니스 기둥 테니스 기둥용 안전패드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용 라켓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용 라켓 손잡이 테니스 또는 배드민턴용 라켓 케이스 테니스 장비 테니스공 테니스공케이스 테니스네트 테니스네트 및 기둥 테니스네트 중앙 끈 테니스라켓 테니스라켓 프레스 테니스라켓용 그립

		테니스라켓용 맞춤식 보호덮개 테니스라켓용 성형커버 테니스라켓용 헤드커버 테니스용 볼 투척기
펜싱	펜싱복	에페(펜싱용 칼) 펜싱용 마스크 펜싱용 보호대 펜싱용 사벨 펜싱용 사브르 펜싱용 장갑 펜싱용 칼 펜싱장갑 펜싱장비 펜싱칼 포일(펜싱용 칼)
핸드볼	핸드볼복	핸드볼공 핸드볼용 장갑

제3절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1. 개념정립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⁵⁾ 개념은 ‘서비스상표 심사 세부 처리지침(2024)’에서 ‘유사판단의 특례’ 중 ‘G430301(스포츠 전문의류, 스포츠용구)’에 대한 해설에 사용된 용어이다. 따라서 본 절의 연구 대상인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개념은 그 위상과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제1절의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와 다르게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상품심사 실무적 관점에 입각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스포츠 일반의류

상품심사 실무적 관점에서 ‘스포츠 일반의류’란 ‘스포츠 전문의류’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통상의류와 혼용 가능하고 거래실정이 중첩되는 의류를 말한다. 따라서 ‘스포츠 일반의류’의 유사군코드는 ‘G430305+통상의류’로 구성되며 ‘스포츠 전문의류(G430301)’와 구분된다. ‘스포츠 일반의류’는 니스분류 제25류에 속하며, 상품의 범위는 ‘기타 스포츠 일반의류(G430305, G450101)’, ‘기타 스포츠셔츠, 스포츠용 속옷(G430305, G4503)’등을 포함한다.

나. 통상의류

‘통상의류’란 ‘일상적으로 몸에 걸치는 여러 가지 옷’으로 해석 가능한 포괄적 개념으로, 유사군코드 G450101(겉옷류), G450102(간호사 유니폼류), G4502(한복류), G4503(속옷류), G450401(보온·치장용 피복류), G4513(방수피복류)을 포함한다.

5) ‘서비스상표 심사 세부 처리지침(2024)’에는 ‘일반의류, 통상의 의류’로 표현하였으나, ‘스포츠 일반의류’와 구분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과제에서 ‘통상의류’로 지칭함.

II. 상품 거래 및 분류 현황

1. 상품 거래 현황

가. 오픈마켓

1) 네이버 쇼핑

‘패션>의류’ 카테고리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의류’와 ‘운동복’이 함께 존재한다. 여기서 ‘운동복’은 ‘스포츠/레저’에 포함된 ‘스포츠 전문의류’와 구분되는 것으로 ‘스포츠 일반의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스포츠 일반의류/통상의류〉

여성패션	서머룩	상의
남성패션	명품가방/지갑	하의
화장품/미용	휴가패션	아우터
가구/인테리어	남성의류	수트/셋업
식품	남성신발	운동복
출산/유아동	남성가방/지갑	테마의류
반려동물용품	언더웨어/잠옷	수영복/비치웨어
생활/주방용품	시계	
가전	주얼리	
디지털	선글라스	
컴퓨터	패션잡화/소품	
스포츠/레저	남녀공용	

2) 쿠팡

‘패션>의류’ 카테고리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의류’와 ‘트레이닝복, 스포츠의류’가 함께 존재한다. 여기서 ‘트레이닝복’은 ‘스포츠/레저’에 포함된 ‘스포츠 전문의류’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스포츠 일반의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스포츠의류’는 ‘스포츠 일반의류’를 포함하고 ‘스포츠 전문의류’와 연계되어 있다.

<쿠팡-스포츠 일반의류/통상의류>

패션의류/잡화

뷰티

출산/유아동

식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홈테리어

가전디지털

스포츠/레저

자동차용품

도서/음반/DVD

완구/취미

여성패션

남성패션

남녀 공용 의류

유아동패션

티셔츠

맨투맨/후드티

셔츠

바지

트레이닝복

후드집업/집업류

니트류/조끼

아우터

테마의류

커플룩/패밀리룩

빅사이즈

의류

티셔츠

맨투맨/후드티

셔츠/남방

정장세트

바지/청바지

트레이닝복

후드집업/집업류

니트류/조끼

아우터

비치웨어

한복/수의

커플룩/패밀리룩

스포츠의류

테마의류

해외직구

스포츠의류

기능성 티셔츠/셔츠

기능성 상하의 세트

기능성 바지/하의

기능성 자켓/집업

요가복

등산의류

골프의류

스키/보드복

수영복/래쉬가드

비치웨어

3) 지마켓

‘의류’ 관련 ‘브랜드의류’와 ‘패션의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통상의류’와 ‘트레이닝복’이 함께 존재한다. 여기서 ‘트레이닝복’은 ‘스포츠’에 포함된 ‘스포츠 전문의류’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스포츠 일반의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마켓-스포츠 일반의류/통상의류〉

남성의류		찾으시는 ITEM명을 입력하세요.		ITEM	BRAND
아우터	정장	청바지	캐주얼셔츠	트레이닝	빅사이즈
점퍼/야상/패딩	정장세트	부츠컷와이드핏	슬리드 셔츠	트레이닝바지	캐주얼셔츠
코트	정장바지	스키니/슬림핏	스트라이프 셔츠	트레이닝세트	니트/가디건
자켓	정장자켓	스트레이트핏	체크 셔츠	트레이닝 상의	점퍼/야상/패딩
	정장조끼				자켓/코트
상의		캐주얼바지	점퍼/야상/패딩	니트	청바지
긴팔티셔츠	긴팔티셔츠	기모 팬츠	바람막이 점퍼	리운드넥 니트	캐주얼바지
맨투맨/후드티	리운드넥티셔츠	치노 면바지	패딩 점퍼	터틀넥/폴리니트	트레이닝복
캐주얼셔츠	폴라 티셔츠	슬랙스	야상/서파리	브이넥 니트	티셔츠
반팔티셔츠	브이넥 티셔츠		후드집업점퍼	집업 니트	
	카리넥티셔츠	반바지	블루중/항공점퍼		비치웨어/수영복
	프린트티셔츠	면/린넨반바지		가디건/조끼	비치웨어
하의/트레이닝		청 반바지	코트		수영복
청바지	맨투맨/후드티		코트	가디건	
캐주얼바지	후드티셔츠		트렌치/맥코트	캐주얼 조끼	테마의류
반바지	맨투맨 티셔츠			패딩 조끼	유니폼/작업복
트레이닝	후드집업		자켓	교복	생활/전통한복
	반팔티셔츠		무스탕/가죽 자켓	교복셔츠	레인코트
니트	반팔티셔츠		블레이저	교복세트	
니트	리운드넥반팔티		데님 자켓	교복바지	드레스셔츠
가디건/조끼	브이넥 반팔티		린넨 자켓	교복조끼/가디건	슬리드셔츠
	카라 반팔티				체크/프린트셔츠
	프린트 반팔티				스트라이프셔츠

나. 오프라인 매장

〈지역별 백화점 층별 안내〉

신세계 백화점(강남)	갤러리아 백화점(대전)
8F 뉴 스트리트/베이직 스포츠/스포츠/아웃도어 	8F SPORTS >
7F 골프/남성 캐주얼/남성 컨템포러리/정장 	7F STREET CASUAL · GOLF · OUTDOOR >
6F 남성 부티 	6F MEN'S WEAR >
5F 여성 클래식/뉴 컨템포러리/핸드백 	5F WOMEN'S WEAR · BABY&KIDS · LINGERIE · FUR >
4F 해외 컨템포러리/슈즈 	4F YOUNG CASUAL · SHOES · ACC · HANDBAG · UNDERWEAR >
3F 인터내셔널 디자이너/럭셔리 워치&주얼리 	3F WOMEN'S WEAR >
2F 해외유명브랜드 	
현대 백화점(대구)	롯데 백화점(광주)
6F 라이프스타일 & 키즈	7F 남성패션 셔츠 · 타이 트레디셔널
5F 맨즈 패션	6F 아웃도어 골프 아동 · 유아
4F 우먼스 패션 & 골프	5F 스포츠 무인양품
3F 우먼스 캐주얼	4F 영패션 핸드백 란제리 진컬쳐
2F 하이엔드 패션	3F 여성패션 슈즈
1F 럭셔리 & 뷰티	2F 해외패션 화장품 시계 · 보석
	1F 해외패션

오프라인 매장은 ‘통상의류’를 주로 성(性)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스포츠 일반의류’는 ‘통상의류’와 동일 층수에 편성되는 될 수 있으나 별도의 ‘스포츠’ 카테고리 관리·안내 하는 경향이 있다.

〈스포츠 일반의류 관련 오프라인 매장〉



〈통상의류 관련 오프라인 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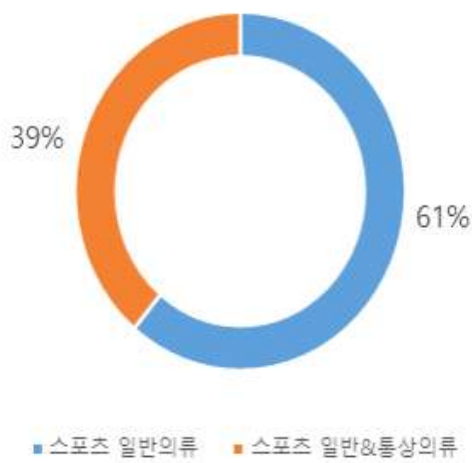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현장조사 결과 ‘통상의류’와 ‘스포츠 일반의류’가 구분되어 편성된 것이 확인되나,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특히, 기능성 및 활동성이 강조된 통상의류는 스포츠 일반의류와 구분이 어렵다.

다. 상표 중첩도 조사

‘상표 중첩도 조사’를 통해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간 제조·판매자 등 건련관계를 분석해 본다.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간 ‘상품 중첩도 조사’는 ‘네이버 쇼핑’의 ‘대분류(성(性) 별 패션) > 중분류(의류) > 소분류(상·하의, 운동복·트레이닝복 등)’에서 등록상품 수를 기준으로 추출된 ‘브랜드’ 명칭을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스포츠 일반의류-통상의류 간 상표 중첩도〉



‘스포츠 일반의류’ 관련 약 144개의 상표 중 39%의 상표가 ‘통상의류’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스포츠 관련 의류
C 제조업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봉제의복 제조업
1411.겉옷 제조업
14111.남자용 겉옷 제조업
14112.여자용 겉옷 제조업

1412.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20.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3.한복 제조업
14130.한복 제조업
1419.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14192.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14193.가죽의복 제조업
14194.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모피제품 제조업
1420.모피제품 제조업
14200.모피제품 제조업
143.편조의복 제조업
1430.편조의복 제조업
14300.편조의복 제조업
144.의복 및 액세서리 제조업
1441.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9.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9.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4.생활용품 도매업
4641.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46413.남녀용 겹옷 및 셔츠 도매업
46414.유아용 의류 도매업
46415.속옷 및 잠옷 도매업
46416.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46417.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47.소매업; 자동차 제외
474.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4741.의복 소매업
47411.남자용 겹옷 소매업
47412.여자용 겹옷 소매업
47413.속옷 및 잠옷 소매업
47414.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47415.한복 소매업
47416.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47417.유아용 의류 소매업
47419.기타 의복 소매업
4742.섬유, 직물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47422.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체육복 제조, 수영복 제조, 스키복 제조 등’을 포함하는 제조업 C14192의 범위를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겹옷, 셔츠류 등은 제외”한다고 설명한다. ‘도매업’은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가 함께 G46413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매업’ 분류는 G47419가 ‘운동복 소매, 수영복 소매, 체육복 소매 등’을 분류범위로 하는바 그 대상이 C14192와 유사하다.

3. 소결

지금까지 상품 거래와 타 업계 분류현황을 살펴보았다. 오픈마켓 현황은 '의류'를 성(性)별로 1차적으로 구분하고, 그 하위 객체로서 '통상의류'와 '스포츠 일반의류'로 평가될 수 있는 '운동복, 트레이닝복, 기능성 의류'를 동일한 수준으로 위치시킨다. 오프라인 매장은 '스포츠 관련 의류'와 '통상의류'를 별도의 카테고리 편성하고 있으나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를 함께 취급하는 매장이 확인된다.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의 상표 중첩도는 ‘스포츠 일반의류’기준 약 39%의 상표가 ‘통상의류’와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체육복 제조, 스키복 제조’ 등을 포함하는 제조업(C14192)의 범위에 대하여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겔옷류와 셔츠류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겔옷류와 셔츠류 등’은 C14192을 제외한 의복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일반의류와 혼용 가능성이 있는 명칭은 스포츠 일반의류로 분류’하여 구분하는 상품심사 지침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간의 견련성을 살펴보면, 양 상품은 ‘의류’로서 본질적 속성 뿐만 아니라, 거래실정(제조·판매자, 유통경로, 수요자 등)면에서도 공통되는 면을 찾아볼 수 있다.

Ⅲ. 상품심사 현황

1. 우리나라

〈우리나라-스포츠 일반의류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상품의 범위
25	G430305 G450101	스포츠 외투, 운동용 유니폼, 트레이닝복 등	○ 기타 스포츠 일반의류
25	G430305 G4503	스포츠 브라, 스포츠셔츠, 후드달린 스웨트셔츠 등	○ 기타 스포츠 셔츠, 스포츠용 속옷

〈우리나라-통상의류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상품의 범위
25	G450101	겔옷, 외투(스포츠의류와 한복은 제외)	○ 겔옷류(스포츠 전용 및 한복은 제외) ○ 외투류(스포츠 전용 및 한복은 제외) ○ 위에 준하는 의복
25	G450102	간호사용 유니폼, 양사용 가운	-

25	G4502	한복	○한복, 개량한복
25	G4503	속옷, 스웨터, 셔츠 등	○주로 피부에 닿거나 겹옷 안쪽에 입는 의류(속옷/내의) ○위에 준하는 의복
25	G450401	양말, 스카프, 의류용 장갑 등	○보온이나 치장을 위한 피복중에서 의복, 모자, 마스크를 제외한 것
25	G4513	방수용 피복	-

‘스포츠 일반의류’는 특정 스포츠 용도로 구분 가능한 ‘스포츠 전문의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통상의류와 혼용이 가능하고 거래실정이 중복되는 의류를 말한다. ‘스포츠 일반의류’의 상품의 범위는 ‘기타 스포츠 일반의류’, ‘기타 스포츠 셔츠, 스포츠용 속옷’ 정도로 확인된다. 이는 ‘스포츠 전문의류(G430301)’가 포함하는 ‘특정 스포츠’가 아닌 이외 분야의 ‘스포츠 관련의류’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일반의류’의 유사군코드 구성과 포함된 고시명칭을 고려하였을 때 ‘기타’란 ‘범(汎)스포츠 활동에 사용되는 것’, ‘일상복과 혼용 가능한 것’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범(汎)스포츠 활동용 스포츠 관련의류, 일상복과 혼용 가능하고 통상의류와 거래실정이 중복되는 스포츠 관련의류 명칭을 ‘G430305+통상의류’로 분류한다. 아울러, 상품심사 실무상 ‘스포츠용’, ‘운동용’만으로 한정된 ‘통상의류’ 역시 ‘G430305+통상의류’로 분류한다.

‘통상의류’는 ‘일상적으로 몸에 걸치는 여러 가지 옷’을 뜻하는 개념으로 니스분류 제25류의 기본이 되는 상품이다. 상품심사 실무에서 ‘통상의류’에는 겹옷류, 속옷류, 보온·치장용 피복류, 방수피복류 등이 포함된다.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는 ‘유사상품 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3호)’ 개정을 통해 ‘스포츠 일반의류’에는 ‘통상의류’의 유사군코드(G450101, G4503)가 포함됨에 따라 건련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2. 일본

〈일본-스포츠 일반의류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25	17A01 17A02 24C01	運動用及び運動競技用シング (스포츠용 싱글렛) ジャージ-製運動用衣服及び ジャージ-製運動用特殊衣服 (「水上スポーツ用特殊衣服」を除く。) (스포츠용 저지) 体操用衣服及び体操競技用衣服 (체조복)
25	17A01 24C01	制服及びユニフォーム (유니폼)
25	17A02 24C01	ラッシュガード (래시가드)
25	17A04 24C01	運転用手袋 (운전용 장갑) 吸汗性ストッキング及び吸汗性 (땀흡수 스타킹)
25	24C01	運動用特殊衣服 (「水上スポーツ用特殊衣服」を除く。) (스포츠용 의류(수상 스포츠용 의류 제외)) グラントコート (스포츠 오버유니폼) スキー-競技用衣服 (경기용 스키복)

〈일본-통상의류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25	17A01 17A02 17A03 17A04 17A07	被服 (의류)

25	17A01	洋服 (비일본식 겉옷)
25	17A02	寝巻き類 (잠옷) 下着 (속옷[내의]) 水泳着 (수영복) 水泳帽 (수영보자)
25	17A01 17A02	キャミソール (케미솔) タンクトップ (탱크탑) TEEシャツ (티셔츠)
25	17A03	和服 (일본 전통의상)
25	17A04	アイマスク (수면 안대) 毛皮製ストール (모피스톨) ショール (솔) ネクタイ (넥타이) バンダナ (반다나[목도리])
25	17A07	ナイトキャップ (나이트캡) 帽子 (의류용 헤드기어)

일본은 ‘스포츠’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의류’에 24C01 코드를 부여한다. 따라서 ‘스포츠 관련의류’는 24C01 단일 또는 ‘통상의류’ 코드와 복수로 구성된다. 24C01 코드만이 부여된 ‘스포츠 관련 의류’가 존재하나, 우리 상품심사 기준의 ‘스포츠 전문의류(G430301)’와 동일한 역할 또는 개념이라 단정할 수 없다.

‘통상의류’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품의 범위를 갖으나 ‘모자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스포츠 관련 의류’는 24C01 단일 또는 복수 유사군코드로 구성되어 ‘통상의류’와 관련검색이 가능하다.

3. 중국

〈중국-스포츠 일반의류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25	2501	运动衫 (스포츠용 저지) 背心式紧身运动衣 (스포츠용 싱글렛)

〈중국-통상의류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25	2501 2502 2503 2504 2505	服装 (의류)
25	2501	衣物 (옷과 일상 용품) 套服 (슈트) 成品衣 (기성복)
25	2502	婴儿纺织用品 (영아 방직 용품) 婴儿全套衣 (신생아복)
25	2503	特种运动服装 (특종 운동 복장) 骑自行车服装 (사이클복) 游泳衣 (수영복)
25	2504	不透水服装 (불투수 복장) 防水服 (방수용 피복)
25	2505	戏装 (무대 의상) 化装舞会用服装 (가면무도회복)

중국 상품분류 체계에서 ‘스포츠 일반의류’는 ‘기성복류’를 포함하는 2501과 동일한 유사군 코드로 분류된다. 따라서 ‘스포츠 일반의류’와 2501에 해당하는 ‘통상의류’ 간 견련검색이 가능하다.

4. 대만

〈대만-스포츠 일반의류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25	250102	西服 ; 大衣 ; 外套 ; 運動服 (양복; 외투; 오버코트; 운동복) 運動衫 (스포츠용 저지) 運動服 (운동복) 運動褲 (운동 바지)

〈대만-통상의류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25	2501	衣服 (의복)
25	250101	內衣 ; 睡衣 ; 汗衫 ; 泳裝 (내의; 잠옷; 속옷; 수영복)
25	250102	西服 ; 大衣 ; 外套 ; 運動服 (양복; 외투; 오버코트; 운동복)
25	250103	民俗服裝 ; 慶典儀式服裝 (민속복장; 축전의식복장)
25	250105	雨衣 (우의)

대만 상품분류 체계에서 ‘스포츠 일반의류’는 ‘양복, 외투, 오버코트’를 포함하는 250102와 동일한 유사군 코드로 분류된다. 따라서 ‘스포츠 일반의류’와 250102에 해당하는 ‘통상의류’ 간 건련검색이 가능하다.

5. 미국

미국은 유사군코드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로서 상품심사 시 전류검색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니스분류에 위치한 상품간 건련검색은 당연하다. 즉, 동일한 니스분류에 위치한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간 건련검색을 한다.

6.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상품(서비스) 간 유사성 평가를 위한 “Similarity Tool”을 제공한다. “Similarity Tool”은 9가지 유사성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1-5단계의 유사도를 평가한다.⁶⁾

〈EUIPO Similarity Tool : 통상의류-스포츠 일반의류〉⁷⁾

N C	통상의류	유사도	N C	스포츠 일반의류
25	Pants(팬츠)	Identical	25	Leisurewear(레저복)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Drawers [clothing](속바지) Drawers as clothing(속바지)			Leisure wear(레저복) Clothing for leisure wear(레저복) Leisure clothing(레저복)
25	Pants(팬츠)	Identical	25	Sweatpants(스웨트팬츠)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Drawers [clothing](속바지) Drawers as clothing(속바지)			Jogging pants(조깅 팬츠) Sweat pants(스웨트팬츠) Track pants(트랙팬츠) Trousers for sweating(발한용 바지) Jogging bottoms(조깅용 바지) Jogging bottoms [clothing](조깅용 바지)
25	Clothing(의류)	Identical	25	Athletic uniforms(운동용 유니폼)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Clothes(의류) Articles of clothing(의류)			
-	-	Identical	25	Padded shorts for athletic use (운동용 패딩반바지)

6) “Similarity Tool”의 9가지 유사성 판단 요소와 1-5단계 수준의 유사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2장>제1절>Ⅲ>6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참고.

7) ‘스포츠 일반의류’ 명칭은 우리나라 ‘유사상품 심사기준’ 고시명칭 또는 고시명칭에 준하는 유사명칭을 추출하였음.

-	-	Identical	25	Padded pants for athletic use (운동용 패딩팬츠)
-	-	Identical	25	Sports bras(스포츠 브라)
-	-	Identical	25	Sports pants(스포츠용 바지)
-	-	Identical	25	Sportswear(스포츠의류)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Articles of sports clothing(스포츠 의류) Clothing for sports(스포츠 의류) Athletic clothing(운동복) Sports clothing(스포츠 의류) Clothes for sport(스포츠 의류) Sports wear(스포츠 의류) Clothes for sports(스포츠 의류) Sports garments(스포츠 의류)
-	-	Identical	25	Gym suits(체조복)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Jogging outfits(조깅복) Sweat suits(땀복) Warm up suits(웜업슈트) Jogging suits(조깅슈트) Track suits(트랙슈트) Warm-up suits(웜업슈트) Sports over uniforms(스포츠 오버 유니폼) Tracksuits(트랙슈트) Sports overuniforms(스포츠 오버 유니폼) Training suits(트레이닝슈트) Sweatsuits(땀복)

-	-	Identical	25	Sports singlets(스포츠용 싱글렛)
-	-	Identical	25	Leisurewear(레저복)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Leisure wear(레저복) Clothing for leisure wear(레저복) Leisure clothing(레저복)
-	-	Identical	25	Jogging tops(조깅용 탑)
-	-	Identical	25	Sports jerseys(스포츠용 저지)
-	-	Identical	25	Sports clothing [other than golf gloves] (운동복[골프장갑 제외])
-	-	Identical	25	Sports shirts with short sleeves (짧은 소매 스포츠셔츠)
-	-	Identical	25	Tracksuit bottoms(트랙슈트용 하의)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Sweat bottoms(스웨트 바지)
-	-	Identical	25	Athletics vests(운동용 조끼)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Sports vests(스포츠 조끼)
-	-	Identical	25	Leisure suits(레저복)
-	-	Identical	25	Sweatpants(스웨트팬츠)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Jogging pants(조깅 팬츠) Sweat pants(스웨트팬츠) Track pants(트랙팬츠) Trousers for sweating(발한용 바지)

				Jogging bottoms(조깅용 바지) Jogging bottoms [clothing](조깅용 바지)
-	-	Identical	25	Jogging sets [clothing] (조깅세트 [의류])
-	-	Identical	25	Running Suits(런닝복)
-	-	Identical	25	Uniforms(유니폼)
-	-	Identical	25	Sweat jackets(스웨트재킷)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Sweatjackets(스웨트재킷)
-	-	Identical	25	Sweat shirts(스웨트셔츠)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Sweatshirts(스웨트셔츠)
-	-	Identical	25	Gym shorts(운동용 반바지)
-	-	Identical	25	Running vests(런닝용 조끼)
-	-	Identical	25	Sports jackets(스포츠재킷)
-	-	Identical	25	Jackets being sports clothing (스포츠의류인 재킷)
-	-	Identical	25	Tracksuit tops(트랙슈트 탑)
-	-	Identical	25	Hooded sweatshirts (후드달린 스웨트셔츠)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Hooded sweat shirts (후드달린 스웨트셔츠) Hoodies(후디[모자 달린 옷])

“Similarity Tool”에 따르면,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는 ‘동일(Identical)’한 수준의 유사도로 평가한다. 아울러, ‘의류(Clothing)’의 경우 우리 유사상품 심사기준상 ‘스포츠 전문의류’로 분류되는 ‘Boxing shorts, Skating outfits, Surfwear, Yoga pants, Dance clothing’ 등과도 ‘동일(Identical)’한 수준의 유사도로 평가한다.

7. 소결

〈국가별 스포츠 관련의류-통상의류 건련검색 여부〉

국가	스포츠 관련의류와 통상의류 간 건련검색	해설
우리나라	△	스포츠 전문의류-통상의류 = X 스포츠 일반의류-통상의류 = ○
일본	△	스포츠 관련의류가 통상의류 코드를 포함하여 건련검색 가능(24C01 만으로 분류된 스포츠 관 련의류는 제외)
중국	○	‘스포츠 일반의류’와 ‘기성복류’를 동일한 유사 군코드 2501로 분류
대만	○	‘스포츠 관련의류’와 ‘양복, 외투’ 등 동일한 유 사군코드 250102로 분류
미국	○	‘스포츠 관련의류’와 ‘통상의류’는 동일한 니스 분류 제25류에 위치하여 건련검색 대상
EUIPO	○	Similarity Tool에 따르면, 스포츠 관련의류와 통상의류 간 ‘동일(Identical)’ 유사도 평가 다수

유사군코드 활용 국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와 유사군 코드 비활용 국가 ‘미국, EUIPO’를 중심으로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간 상품심사 현황을 살펴보았다.

유사군코드 활용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복수 유사군을 활용하여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를 건련검색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중국과 대만은 스포츠 일반의류를 통상의류와 동일한 유사군 코드로 분류하여 건련검색이 당연하다. 유사군코드 비활용 국가인 미국은 전류검색을 원칙으로 할 뿐 만 아니라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가 동일한 니스분류 제25류에 위치하여 건련검색 대상이 된다. EUIPO는 ‘통상의류’와 ‘스포츠 일반의류’의 유사도를 ‘동일(Identical)’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 상품심사 연혁을 살펴보면, 과거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 일반의류’를 하나의 유사군코드(G430301)로 관리하여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간 건련검색이 불가능했으나, ‘유사상품 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3호)’ 개정을 통해 ‘스포츠 일반의류’에 ‘통상의류’ 유사군 코드를 부여해 복수 형태로 분류함으로써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간 건련검색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는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으로써 주요국 상품심사 동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지금까지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간의 건련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개념은 그 위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상품심사 실무적 관점으로 정립하였다.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오픈마켓 현황은 ‘통상의류’와 ‘스포츠 일반의류’가 동일한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은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를 달리 편성·안내하고 있으나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를 함께 취급하는 매장이 확인되고, 양 상품 간 상표 중첩도는 약 39%로 확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체육복 제조’ 등을 포함하는 제조업(C14192)의 범위에 대하여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류와 셔츠류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하여 ‘일반의류와 혼용 가능성이 있는 명칭은 스포츠 일반의류로 분류’하는 상품심사 지침과 유사한 면이 있다.

각국의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간 상품심사는 그 체계가 상이하나, 복수 유사군 부여 방식 또는 동일한 유사군코드 분류 방식 등을 통해 양 상품 간 건련검색을 수행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간의 견련성을 살펴보면, 양 상품은 '의류'라는 본질적 속성 뿐만 아니라, 거래실정(제조·판매자, 유통경로, 수요자 등) 면에서도 공통되는 면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관련의류'를 하나의 유사군 코드(G430301)로 관리하여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간 견련검색이 불가능 했던 과거와 달리,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 간 유사군 코드를 공유케 하여 견련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유사상품 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3호)'은 상품 자체의 속성과 거래실정 그리고 주요국 상품심사 동향을 고려한 개정으로 판단된다.

제4절 종합 결론

본 장은 '스포츠 관련의류와 관련 상품'의 견련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간의 관계는 '의류'와 '용구'라는 상품 자체의 속성 보다 '특정 스포츠'에 따른 거래실정의 견련성이 유의미하게 조사된다. 따라서 양 상품간 유사판단 특례의 해석은 '특정 스포츠'에 따른 거래실정의 유사성을 비중을 두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의 관계는 '의류'라는 상품 자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거래실정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일반의류'를 '통상의류'와 견련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한 현행 유사상품 심사기준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스포츠의류 또는 스포츠 룩(Sports look)을 일상복으로 활용하고 패션화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 변화 및 거래실정을 반영한 상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3장 수선·특수가공업과 관련 상품(서비스)

제1절 서론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니스분류 제37류 ‘수리·수선업’과 제40류 ‘특수가공업’은 서비스업의 대상(수리·수선·가공의 대상)에 상응하는 개별 상품을 기초로 하여 유사군코드가 만들어져 있고, 연혁 상 2012년 3월 이전까지 양자 간 견련관계로 보았던 만큼 이들 서비스업과 상응하는 개별 상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리·특수가공업 관련 지정상품 분류 예시〉

	수리업	특수가공업
NICE	NICE 37	NICE 40
한국 유사군코드	S050109~S050199	S100101~S100199
구체적 상품예시	흡연용구 수리 ~ 기타 물품 수리/수선업	고무 가공업 ~ 기타 가공업

현재 심사기준에 의하면 2012년 3월부터 서비스업과 상품간은 심사단계에서는 비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 특허심판원의 심결 및 법원(특허법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서비스업과 상품간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2년 심사기준이 정해진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수리·수선업’과 ‘특수가공업’ 및 그에 상응하는 상품들에 견련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심사 실무에 있어서도 일부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상품심사에 작게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니스분류 제37류 ‘수리·수선업’과 그에 상응하는 상품간의 견련성 분석 및 40류 ‘특수 가공업’과 그에 상응하는 상품간의 견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념정립을 시작으로, 거래실정 및 분류현황을 조사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와 타국의 상품심사 현황을 연구·분석하였다.

제2절 수리·수선업 및 특수가공업

1. 개념정립

‘유사상품 심사기준(2024)’에 비추어 수리·특수가공업을 살펴보면, 수리업은 ‘주로 건설,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대상물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보전하는 서비스업’으로 정의된다.

수리업의 유사군코드는 상품을 기초로 하여 S050109~S050199까지의 28개 유사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상품 ‘흡연용구, 담배’에 해당하는 G0901, G0902의 앞부분 ‘09’를 따와서 ‘S050109’로 하고 ‘흡연용구 수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태이다. ‘S050109 ~ S050152’까지 27개의 유사군은 이와 같은 형태이고, ‘S050199’는 ‘기타 수리업’으로 여러 상품들을 묶어 놓은 것이다.

특수가공업은 ‘제품 또는 무기, 유기물질의 기계적, 화학적 처리 또는 변형 또는 가공 서비스업’으로 정의 된다. 다만, 분류 목적상,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는 주문 및 규격요청에 따라 주문 및 규격요청을 한 자에 대한 몫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서비스업으로 간주된다. 만일 생산 또는 가공하는 행위가 고객의 요구사항, 주문규격 등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자의 부수적이고 기본적인 영리활동 내지 상표의 상품에 해당된다. 물질 또는 물품의 가공 또는 변형한 자에 의하여 타인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다.

특수가공업의 유사군코드는 ‘S100101 ~ S100199’의 14개 유사군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가공업은 수리업과는 달리 ‘고무, 플라스틱, 직물, 금속 등’의 재료에 따라 ‘S100101 ~ S100113’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S100199’는 수리업과 마찬가지로 ‘기타 가공업’으로 여러 상품들을 포함한다.

II. 상품 거래 현황 및 표준산업분류 현황

1. 수리/수선업 및 특수가공업 관련 상품 거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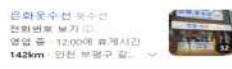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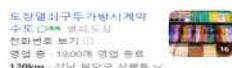
가. 수리/수선업

수리/수선업 안에는 상품류 1류~34류에 있는 ‘수리/수선’이 가능한 대부분의 상품이 들어 있으므로 이를 전부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사관 및 조사원 의견을 청취를 통해 선정한 7개 서비스업(싱크대 수리업[S050118], 가방 수선업[S050125], 가구 수리업[S050126], 신발 수선업[S050127], 에어컨 수리업[S050128], 시계 수리업[S050135], 컴퓨터 수리업[S050139])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선정한 7개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각각의 상품군과 ‘정의, 유사군코드, 용도/내용/상품속성, 주체, 장소, 수요자’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1) 싱크대 수리업(S050118)

	싱크대 수리업	싱크대
정의	집안에 설치 된 싱크대의 고장이나 오작동을 수리하는 사업	물을 흘려보내며, 물건을 씻을 수 있도록 만든 곳
유사군 코드	37류/S050118	11류/G1806
용도 / 내용 / 상품 속성	용도 : - 집안에 설치된 싱크대를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 수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내용 : - 싱크대의 상/하부장 수리 - 누수 관련 수리, 등	상품 속성 : - 물로 물건을 씻을 때 사용하며, 부엌용, 세탁용, 실험실용, 의료용 등 용도가 다양함
주체	지역 기반 가구 수리 전문점 위주로 구성됨 	가구 및 인테리어 업체 위주로 검색됨 
장소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 가정집	싱크대 제조/판매업자의 판매/홍보매장
수요자	싱크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싱크대를 사용하는 일반수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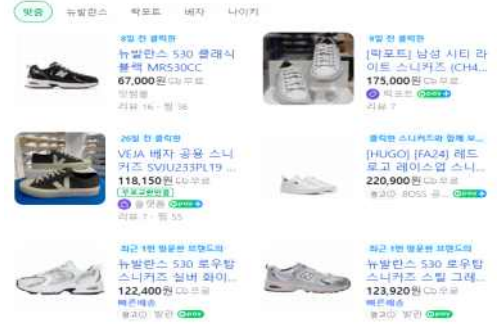
2) 가방 수선업(S050125)

	가방 수선업	가방
정의	가방의 손상이나 파손을 수리하고, 가방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물건을 넣어 들거나 메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용구
유사군 코드	37류/S050125	18류/G2501
용도 / 내용 / 상품 속성	용도 : - 가방의 손상이나 파손을 수리하는 서비스 내용 : - 가방의 지퍼 등 부품을 수리하는 것 - 가방 가죽의 손상을 복원 하는 것	상품 속성 : - 물건을 넣어 들고 다니는 용도
주체	지역 기반 가방 수리 전문점 위주로 검색되며, 의류 수선을 겸하는 경우가 다수 검색됨      	백화점에 입점된 대형 브랜드부터 온라인 위주의 소규모 브랜드 등 다양하게 검색됨.  
장소	가방 수선집에 개인이 찾아가서 수선을 의뢰 하는 형태가 많음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쇼핑몰
수요자	가방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 및 기업	가방 구매를 원하는 일반수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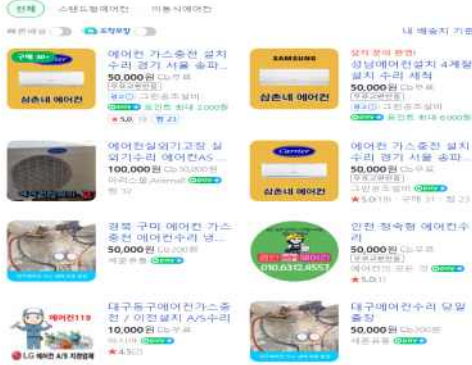
3) 가구 수리업(S050126)

	가구 수리업	가구
정의	집안에 설치 된 가구를 수리하는 것	집안 살림에 쓰는 기구. 주로 장롱, 책장, 탁자와 같이 비교적 큰 제품
유사군 코드	37류/S050126	20류/G2601
용도 / 내용 / 상품 속성	용도 : - 가구를 구매한 고객이 사용하던 가구를 직접 수리하지 못할 때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 수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내용 : - 가구 이음새의 경칩 교체와 같은 것부터 스크레치나 페인트칠의 교체와 같은 행위를 포함함	상품 속성 : -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 - 물건을 보관하거나, 장식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됨
주체	지역 기반 가구수리 전문점 위주로 구성됨 제일가구A/S수리점 수리.AS 0507-1313-2178 2.7km · 대전 동구 태평동 가구수리 수리.AS 053-792-1814 130km · 대구 수성구 서지동 가구수리점 수리.AS 061-244-8289 196km · 목포 남교동 제일가구수리점 수리.AS 042-543-2178 6.8km · 대전 서구 관저동 제일가구수리점 수리.AS 042-273-2178 7.4km · 대전 동구 평암동 모두주방가구 수리.AS 042-636-9123 4.6km · 대전 동구 가양2동	대기업부터 소규모 업체까지 다양하게 검색됨 (한샘, 에이스침대, 퍼시스, 현대리바트, 시디즈, 등) 현재 이제야 장롱 종서가구 스파드락 리바트 자코모 까사파라 알도 내 배송지 기준 사무실 열소강 월라 태스 요가 스테디... 5,900원 Cb 지붕 본리인 박카코트 Optima 부엌도 최대 179원 ★ 4.88 34 월 3 국내자재제작 매장/ 가장용 상품 고급 ... 620,000원 Cb 지붕 Optima 부엌도 최대 12,400원 리바트 월 1 한바탕은 10% 더 저렴 리움에스알 6인용 책상 양면세라믹 ... 930,000원 Cb 지붕 Optima 부엌도 최대 117,600원 한바탕 시작 시 최대 117,600원 지앤디스플레이 이 동식 행거 질레 스... 최저 44,900원 Cb 10,000원 관대치 11 ★ 4.84(7,205) 월 235
장소	가구를 구매한 고객의 배송지	가구 제조/판매업자의 판매/홍보매장
수요자	가구를 사용하는 모든 일반수요자	가구를 사용하는 일반수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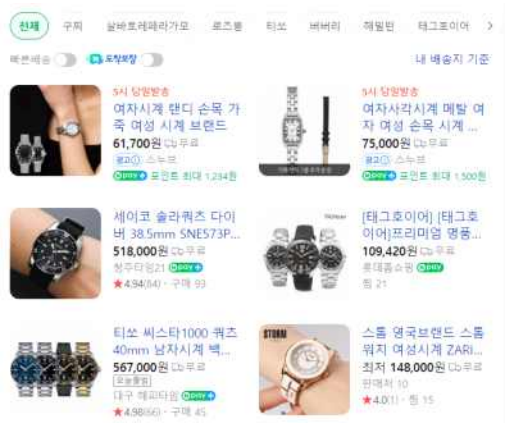
4) 신발 수선업(S050127)

	신발 수선업	신발
정의	신발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서비스	발에 신는 물건의 총칭
유사군 코드	37류/S050127	25류/G270101
용도 / 내용 / 상품 속성	용도 : - 신발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함 내용 : - 신발의 굽을 수선하는 것 - 신발 가죽의 갈라짐 등을 수선하는 것 - 더러워진 신발을 깨끗하게 복원하는 것	상품 속성 : - 발을 보호할 목적의 제품으로 미끄럼 방지 및 장식의 기능이 있음.
주체	지역 기반 신발 수리 전문점 위주로 검색됨 	대형 브랜드부터 중소기업체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검색됨 
장소	신발 수선을 하는 소규모 업장에 일반수요자가 방문하여 수선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 쇼핑몰
수요자	신발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	신발을 구매하고자 하는 일반수요자

5) 에어컨 수리업(S050128)

	에어컨 수리업	에어컨
정의	에어컨디셔너를 설치, 관리, 수리하는 서비스	실내온도를 낮추거나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가정용 기계장치인 가정용 에어컨디셔너
유사군 코드	37류/S050128	11류/G2802
용도 / 내용 / 상품 속성	용도 : - 냉방장치는 유지 보수(관리 및 수리)가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설치 후에도 유지 보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됨 내용 : - 에어컨 조립 및 설치 - 본체 및 실외기 수리 - 에어컨 가스, 펌프 등 내부 장치 수리	상품 속성 : - 가정용 에어컨디셔너는 온도를 낮추거나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전기기임
주체	지역 기반 및 전국 단위의 수리 전문 업체 검색됨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에어컨 등 대형 업체 위주 
장소	에어컨이 설치된 기업 및 가정	전자제품 제조업체
수요자	에어컨디셔너의 수리 또는 관리가 필요한 기업 또는 개인	가전기기유통업체, 난방기기유통업체, 가전제품판매업체, 기업, 숙박시설, 음식점

6) 시계 수리업(S050135)

	시계 수리업	시계
정의	시계의 고장 및 오작동을 진단하고 수리하는 서비스	시간을 재거나 시각을 나타내는 기계나 장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유 사 군 코드	37류/S050135	14류/G3501
용도 / 내용 / 상품 속성	용도 : - 시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내용 : - 시계 부품 및 장치 수리 - 시계 줄 등 액세서리 수리	상품 속성 : - 시간을 측정하는 기능 외에, 패션 소품으로도 사용 - 손목에 착용, 목에 걸어서 착용, 벽면 설치
주체	지역 기반 시계 수리 전문점 위주로 검색됨 	고가의 명품 시계 및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도 시계로 검색됨 
장소	개인이 수리업체에 방문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 모두에서 판매되고 있음
수요자	시계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 및 기업	시계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

7) 컴퓨터 수리업(S050139)

	컴퓨터 수리업	컴퓨터
정의	컴퓨터장비의 수리를 담당하는 서비스	전자 회로를 이용한 고속의 자동 계산기. 숫자 계산, 자동 제어, 데이터 처리, 사무 관리, 언어나 영상 정보 처리 따위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유 사 군 코드	37류/S050139	09류/G390803
용도 / 내용 / 상품 속성	용도 : - 기업 및 개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돕기 위함 내용 : - 컴퓨터 부품 수리 및 교체	상품 속성 : - 인터넷 검색, 그래픽 작업, 문서작업, 엔터테인먼트용 등으로 사용되는 개인용 컴퓨터
주체	지역 기반 컴퓨터 수리 업체 및 전국단위 수리업체 각각 검색되며, 컴퓨터 제조업자의 서비스 센터도 같이 검색됨 	삼성, LG, 애플 등 업체 검색됨 
장소	개인이 수리업체에 방문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 모두에서 판매되고 있음
수요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 및 기업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

분석결과, 각 서비스업은 공통적으로 수리/수선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별도로 검색되며,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업체들 위주로 검색된다. 최종수요자를 일부 공유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상이하고 제공주체 및 제공장소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기 유사군코드 외 '의류(S050145), 악기(S050151), 의료용 기계기구(S050111)' 등의 유사군코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검색결과가 도출된다.

나. 특수가공업

특수가공업 역시 14개의 유사군코드 안에 가공이 가능한 대부분의 재료 및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상품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사관 및 조사원 의견 청취를 통해 선정한 '커피 가공업' 과 '식품 가공업'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1) 커피 가공업(S100113)

국내커피시장은 국내에서 커피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1차적으로 수입을 통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고 그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커피 가공업 산업구조〉



40류/커피가공업은 표의 '가공시장' 부분에 해당되고, 30류/커피(35류 도소매 포함)와 43류/커피전문점은 '소비시장, 수입시장'에 해당된다. 현재 상품심사 역시 40류는 건련검색하지 않으며, 30류/43류에 대해서는 건련검색을 하고 있다. 따라서 '40류/커피 가공업', '30류/커피', '43류/커피전문점'에 대해 표를 통하여 같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커피 가공업·커피·커피 전문점업 비교표〉

	커피 가공업	커피	커피 전문점업
정의	커피 가공품,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커피나무의 열매를 볶아서 간 가루.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독특한 향기가 있어 차의 원료로 널리 애용되고, 과자나 음료수의 복합 원료로도 많이 쓴다.	다양한 종류의 커피와 차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서비스업
유사군 코드	40류/S100113	30류/G0502	43류/S120602,G0301,G0502
주체 및 내용	커피 가공 전문 업체 → 대기업부터 소규모 업체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중 커피전문점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도 속해 있음	동서식품, 남양유업, 네슬레코리아, 한국맥넬티, 스토아 브랜드 등 규모가 큰 업체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업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및 소규모 개인 커피 전문점 → 통계청 22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10만개를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대형프랜차이즈 비중은 약 30% 정도이다.
장소	커피 가공 공장을 기반으로 하여 가공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트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유통을 총괄함	각 지역 기반의 개별 점포로 운영됨
수요자	동서식품 등의 업체 및 커피 전문점	일반 수요자 및 커피 전문점	일반 수요자

30류/커피와 43류/커피전문점은 최종수요자가 ‘일반수요자’로 동일하나, 커피 가공업은 장소와 수요자가 이들과 구분된다. 대형프랜차이즈 업체가 커피 가공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자체 커피전문점 브랜드에 납품하기 위한 것이고, 이들 업체가 커피 가공을 위주로 하여 ‘동서식품’ 등의 커피 업체 및 다른 커피전문점에 유통하고 있지 않다. 또한, 커피 가공업은 개념정리에서 다뤘듯 ‘주문 및 규격요청에 따라 주문 및 규격요청을 한 자에 대한 몫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커피전문점에서 자체로 원두를 가공하거나

그것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자의 부수적이고 기본적인 영리활동 내지 상표의 상품'에 해당되므로 '커피 가공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식품 가공업(S100113)

식품 가공은 그 재료(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가 광범위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가공하는 업체가 상이하다. 따라서 이를 각 재료 또는 제품군 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현재 유통구조를 고려하여 대표적인 3개 업체를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국내 유통구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이를 대표 할 수 있는 업체인 '이마트', '쿠팡', '마켓컬리'를 선정하여 비교한다.

〈유통구조를 고려한 식품 가공업 비교표〉

업체	이마트	쿠팡		마켓컬리		
브랜드	노브랜드	GOMGOM		마켓컬리		
최종판매자	이마트	씨피엘비(주) * 쿠팡 계열사		(주)컬리		
제조업자 (예시)	이마트, 쿠팡, 마켓컬리는 모두 자체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 제조/가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제품은 OEM(주문자 상표부착생산)과 같은 방식을 통해 가공전문업체에 위탁한 것을 최종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엔젤식품		(주)광천맛김		만선 영어조합법인
		사조산업(주)		(주)초원식품		농업 회사법인 제철소(주)
		(주)사조오양		(주)이안스푸드 글로벌		(주)남해수산
최종수요자	일반 수요자		일반 수요자		일반 수요자	

일반수요자 입장에서는 최종판매자이자 해당 브랜드인 ‘노브랜드’, ‘gomgom’, ‘(주)컬리’에 대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지만, 이를 가공/제조하는 것은 40류/식품가공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최종판매자와 중간제조업자는 서비스업 목적, 제공장소, 내용이 구분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가. 수리/수선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수리업 예시〉

싱크대 수리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53.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9.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99.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가구 수리
·가정용품 종합 수리
가방 수리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53.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9.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92.가족,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가족제품 수리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
신발 수리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53.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9.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92.가족, 가방 및 신발 수리업
·신발 수리
에어컨 수리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53.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1.가전제품 수리업
95310.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전자제품 수리 ·가정용 전기제품 수리 ·가정용 전열기 수리
시계 수리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53.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9.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93.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시계 수리
컴퓨터 수리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51.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9511.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95110.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컴퓨터 수리 ·주변기기 수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유사상품 심사지침’에서 ‘수리업’으로 분류되는 서비스업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수리업’으로 분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니스분류 제37류의 수리/수선 관련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대분류 ‘C34,S95’에 해당한다.

- 나. 특수가공업
1) 커피 가공업(S10011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커피 가공업〉

커피
C. 제조업
10.식료품 제조업
108.기타 식품 제조업
1089.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91.커피 가공업
G.도매 및 소매업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3.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4632.가공식품 도매업
46325.커피 및 차류 도매업
47.소매업; 자동차 제외
472.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4722.가공식품 소매업
47229.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I.숙박 및 음식점업
56.음식점 및 주점업
562.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2.비알코올 음료점업
56221.커피 전문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유사상품 심사지침’에서 ‘커피 가공업’ 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제조업과 이에 대한 ‘도·소매업’ 및 ‘커피 전문점’ 에 대해 각각 ‘C.’, ‘G.’, ‘I.’ 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2) 식품 가공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식품 가공업〉

가공 식품
C. 제조업
10.식료품 제조업
107.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0.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09.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3.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4631.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46319.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47.소매업; 자동차 제외
472.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4721.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47219.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유사상품 심사지침’에서 ‘식품 가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제조업’과 이에 대한 ‘도·소매업’에 대해 대분류 상 ‘C.10.’, ‘G.46.’, ‘G.47.’로 구분하고 있다.

3. 소결

지금까지 수리·수선업 및 특수 가공업과 각 상품의 거래 및 분류현황을 살펴보았다. 수리·수선업은 각 상품들과 비교 분석 결과 최종수요자를 일부 공유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상이하고 제공 주체 및 제공 장소가 구분된다. 이와 같은 사용실태는 상기 표 이외의 다른 수리·수선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도 ‘수리·수선업’을 일반 상품 및 도소매업과 완전히 다른 분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수 가공업 중 ‘커피 가공업’을 ‘30류/커피’, ‘43류/커피 전문점’과 같이 비교·분석한 결과, 현행 유사상품 심사지침과 같이 ‘30류/커피’와 ‘43류/커피전문점’은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40류/커피 가공업’과는 제공주체와 수요자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식품 가공업’의 경우도 최종판매자와 중간 제조업자(특수 가공업을 행하는 업체)간 제공 내용, 수요자, 제공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도 ‘커피 가공업’과 ‘커피, 커피전문점’ 및 ‘식품 가공업’과 ‘식품 도·소매업’은 대분류부터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Ⅲ. 상품심사 현황

1. 일본

〈일본 수리업 관련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수리업	류	유사군 코드	관련상품
37	37E11	かばん類又は袋物の修理 (가방 또는 파우치 수선업)	18	21C01	かばん類 (가방류) 袋物 (파우치)
	37E01	家具の修理 (가구 수리업)	20	20A01	家具 (가구)
	37E05	靴の修理 (신발 수선업)	25	22A01	靴類 (신발 및 부츠[스포츠용 특수 신발 제외])
	37A01	業務用暖冷房装置の修	11	09E11	業務用暖冷房装置

37D05 37D11 37E01	理又は保守 (산업용 에어컨디셔너 수리/유지관리업)			(산업용 에어컨디셔너)
37E06	時計の修理又は保守 (시계 수리 또는 관리업)	14	23A01	時計 (시계)
37D06	電子応用機械器具の修 理又は保守 (전자기계기구 수리 또는 관리업)	09	11C01	電子計算機及びその周辺機器 (컴퓨터 및 주변기기)
37A01 37D06	コンピュータハードウェ アの設 置工事、保守及び修理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유지관리 및 수리업)			

일본의 상품분류 체계에서는 37류와 그에 상응하는 상품군에 대해 유사하게 보는 사례는 없다.

〈일본 가공업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40	40C09	食料品の加工 (식품 가공업)
30	29B01	コ－ヒ－ (커피) * 「コ－ヒ－」「ココア」は「ウ－ロン茶」「紅茶」に類似と推定する。 ‘커피’, ‘코코아’는 ‘우롱차’, ‘홍차’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 「コ－ヒ－」は、第32類「コ－ヒ－シロップ」に類似と推定する。 ‘커피’와 32류 ‘커피시럽’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43	42B01	飲食物の提供 (식품 및 음료 제공업)

40류의 경우 ‘식품 가공 및 커피’를 중심으로 40류와 30류 및 43류를 비교하여 보았고, 40류와 43류 모두 건련검색하지 않고 있다. 특히 43류 ‘커피전문점’의 경우 우리나라는 30류 ‘커피음료’와 동일유사하게 보는 것과 달리 일본은 이에 대해서도 건련검색하지 않고 있다.

30류에서만 ‘커피와 차’ 및 ‘커피와 32류의 커피시럽’에 대해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 40류 식품가공과 29류/30류/31류의 분류체계를 비교하여 보았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건련검색을 하지 않고 있다.

2. 중국

〈중국 수리업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수리업	류	유사군 코드	관련상품
37	3715	家具的修复、保养 (가구 수리 및 유지 관리)	20	2001	家具 (가구)
	3706	厨房设备安装 (주방 설비 설치)	11	1109	卫生设备(不包括盥洗室用具) 위생용품(화장용품 제외)
	3706	空调设备的安装和修理 (에어컨 장비 설치 및 수리)	11	1106	干燥、通风、空调设备(包括 冷暖房设备),气体净化设备 (건조, 환기, 공조설비(냉난방설비 포함), 가스정화설비)
	3716	皮革保养、清洁和修补 (가죽 관리, 청소)	18	1802	不属别类的皮革、人造皮革 制品, 箱子及旅行袋, 日用 革制品 (기타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가죽 및 인조가죽 제품, 상자 및 여행가방, 일상용 가죽 제품)
	3718	修鞋 (신발 수선)	25	2507	鞋 (구두)
	3711	钟表修理 (시계 수리)	14	1404	钟, 表, 计时器及其零部件 (시계, 손목시계, 시계와 이들의 부분품)
	3706	计算机硬件安装、维护和修理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유지 관리 및 수리) 与计算机硬件安装、保养和 修理有关的信息技术咨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유지, 수리 관련 정보기술 컨설팅)	09	0913	电器用晶体及碳素材料, 电 子、电气通用元件 (전기제품, 일반 전자 및 전기 부품용 크리스탈 및 탄소 소재)

중국 상품분류 체계에서도 37류와 관련 상품에 대해 건련검색하는 경우는 없다.

〈중국 가공업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40	4008	食物、饮料加工服务 (식품 및 음료 가공 서비스) * 注：本类似群与4001碾磨加工类似，与第九版及以前版本4002碾磨加工交叉检索。-> 4001, 4002와 유사함 * 4001综合加工及提供信息服务(정보서비스의 종합처리 및 제공) * 4002金属材料处理或加工服务(금속 자재 취급 또는 처리 서비스)
30	3001	咖啡，咖啡代用品，可可 (커피, 커피 대용품, 코코아) * 注： 1.加奶可可饮料，加奶咖啡饮料，加奶巧克力饮料，咖啡饮料，可可饮料，巧克力饮料与2907 2.四自然段，3002第(二)部分，3202类似，与第十版及以前版本2907马或骆驼乳酒(奶饮料),乳酒(牛奶饮料),3011豆浆，豆汁交叉检索； 3.本类似群与第八版及以前版本2904果仁巧克力酱交叉检索。 * '주(注)' 내용 요약 -> 29류의 2907, 2904와 견련검색 -> 30류의 3002, 3011과 견련검색 -> 32류의 3202와 견련검색
43	4301	提供餐饮，住宿服务 (케이타링 및 숙박 서비스 제공)

40류의 경우 '커피'를 중심으로 40류와 30류 및 43류를 비교하여 보았고, 40류와 43류 모두 견련검색하지 않고 있다. 40류 내에서만 '4001', '4002'를 복수유사군처럼 '4008' 과 같이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43류 '커피전문점'의 경우도 우리나라가 30류 '커피음료'와 동일유사하게 보는 것과 달리 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견련검색 하지 않고 있다. 30류의 '커피'만 29류 및 32류의 '커피' 관련 상품에 대해서 견련검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 40류 식품가공과 29류/30류/31류의 분류체계를 비교하여 보았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견련검색을 하지 않고 있다.

3. 대만

〈대만 수리업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37	371012	鍋爐清潔及修理 (기계 설치, 유지보수 및 수리) <에어컨 등을 포함하는 유사군임>	11	1118	空調設備 (에어컨 장비)
	3711	家電產品安裝修理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			
	3726	廚房設備安裝修理 (주방 설비 설치 및 수리) 廚具安裝修理 (주방용품 설치 및 수리)	11	1104	爐台；洗濯台；洗濯槽；流理台；調理台 (싱크대 등)
	372901	家具修復 (가구복원)	20	2001	家具 (가구)
	372917	鐘錶修理 (시계수리)	14	1406	鐘；錶；鐘組件；錶組件 (시계; 시계구성요소)
	372918	旅行箱修理 (여행가방 수리)	18	1802	錢包；書包；手提包；旅行箱 (지갑; 여행가방)
	371502	皮鞋修理 (신발 수리)	25	2503	鞋 (신발)
	3703	電腦硬體安裝保養及修理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유지 관리 및 수리)	09	0917	電腦硬體 (컴퓨터 하드웨어)

대만 상품분류 체계에서도 37류와 관련 상품에 대해 건련검색하지 않고 있다.

〈대만 가공업 분류 현황〉

류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40	4011	食物材料處理 (식재료 취급) *備註: 「食物材料處理」組群所有服務需檢索4019「提供材料處理資訊」組群所有服務(비고: 4019 자재취급 정보제공과 같이 검색)
30	3002	咖啡豆; 可可粉; 巧克力粉; 咖啡飲料; 可可飲料; 巧克力飲料 (커피콩; 초콜릿 분말; 코코아 음료)
	300201	咖啡豆; 可可粉; 巧克力粉(커피콩 초콜릿 분말)
	300202	咖啡飲料; 可可飲料; 巧克力飲料(커피 음료; 초콜릿 음료)
		* 備註: 「咖啡飲料; 可可飲料; 巧克力飲料」小類組所有商品需檢索3202「汽水; 果汁; 礦泉水; 清涼飲料; 製飲料用糖漿」組群、290101「獸乳; 調味乳; 乳酸菌飲料」小類組、290102「米漿; 豆漿; 豆奶」小類組、300102「茶包; 冰茶; 茶飲料」小類組所有商品及351902「飲料零售批發」小類組所有服務及430201「餐廳」小類組中之「冷熱飲料店」、「泡沫紅茶店」服務
		* '비고(備註)' 내용요약 → 29류의 290101, 290102와 건련검색 → 30류의 300102와 건련검색 → 32류의 3202와 건련검색 → 35류의 351902와 건련검색 → 43류의 430201(음료 제공업 관련)과 건련검색
43	430201	餐廳 (식당) * 備註: 一、「餐廳」小類組所有服務需檢索3015「八寶粥; 便當; 飯速食調理包; 速食麵; 麵速食調理包」組群所有商品 二、「冷熱飲料店」、「泡沫紅茶店」服務需檢索3202「汽水; 果汁; 礦泉水; 清涼飲料; 製飲料用糖漿」組群、300102「茶包; 冰茶; 茶飲料」小類組、300202「咖啡飲料; 可可飲料; 巧克力飲料」小類組所有商品 三、「冰果店」、「冰店」、「冰淇淋店」服務需檢索3003「冰; 冰淇淋」組群所有商品 四、「茶藝館」、「茶館」服務需檢索3001「茶」組群所有商品 五、「咖啡廳」、「咖啡館」、「流動咖啡餐車」服務需檢索3002「咖啡豆; 可可粉; 巧克力粉; 咖啡飲料; 可可飲料; 巧克力飲料」組群所有商品 六、「啤酒屋」服務需檢索3201「啤酒」組群所有商品 * '비고(備註)' 내용요약 → 30류 3015, 300102, 3003, 3001, 3002(커피, 차, 등)와 건련검색 → 32류 3201, 3202(청량음료, 음료용 시럽 등)와 건련검색

40류도 관련 상품과 견련검색하지 않고 있으며, 40류 내에서만 ‘4011(자재취급 정보제공)’에 대해 같이 검색하도록 하고 있다. 43류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30류 및 32류에 대해 견련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4. 미국

〈미국 Coordinated class : 제37류, 제40류〉

037 Construction and repair services	
International classes	U.S. classes
035 Advertising and business services	A Goods certification marks
036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B Services certification marks
038 Communication services	200 Collective membership marks
039 Transportation and storage services	
040 Material treatment services	
041 Education and entertainment services	
042 Computer, scientific, and legal services	
043 Hotels and restaurants services	
044 Medical, beauty, and agricultural services	
045 Personal services	

040 Material treatment services	
International classes	U.S. classes
035 Advertising and business services	A Goods certification marks
036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B Services certification marks
037 Construction and repair services	200 Collective membership marks
038 Communication services	
039 Transportation and storage services	
041 Education and entertainment services	
042 Computer, scientific, and legal services	
043 Hotels and restaurants services	
044 Medical, beauty, and agricultural services	
045 Personal services	

미국은 유사군코드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로서 상품심사 시 전류검색을 원칙으로 하나, 상품(서비스) 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분류를 편성한 “Coordinated class”를 제공하여 견련검색을 권장한다.

“Coordinated class”에 따르면, 37류와 상품간은 비유사로 보고 있으며, 40류도 상품과 견련검색을 하고 있지 않다. 37류와 40류에 대해서 35류도 같이 보도록 되어 있으나, ‘Advertising and business services’에 대해서만 같이 보기 때문에 일반 도소매업과는 비유사로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 40류와 43류에 대해서도 유사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Hotels and restaurants services’로 표기되어 있어 ‘커피전문점’과는 비유사로 보고 있다고 추정된다.

5.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상품(서비스) 간 유사성 평가를 위한 “Similarity Tool”을 제공한다. “Similarity Tool”은 9가지 유사성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1-5단계의 유사도를 평가한다.⁸⁾

〈EUIPO Similarity Tool : 수리업-관련상품〉

N C	수리업	유사도	N C	관련상품
37	Computer installation and repair (컴퓨터 설치 및 수리)	Similar		Computers (컴퓨터)
			09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Computer apparatus (컴퓨터 기기)
37	Installation and repair of air-conditioning apparatus (에어컨디셔닝 장치 설치 및 수리)	Similar		Air-conditioning apparatus (에어컨디셔닝 장치)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Air conditioning apparatus installation and repair (에어컨디셔닝 장치 설치 및 수리) Air-conditioning system installation and repair (에어컨디셔닝 시스템 설치 및 수리)		11	Air conditioners (에어컨디셔너) Air conditioning apparatus (에어컨디셔닝 장치) Air conditioning devices (에어컨디셔닝 장치)

8) “Similarity Tool”의 9가지 유사성 판단 요소와 1-5단계 수준의 유사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2장>제1절>Ⅲ>6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참고.

	수리) Installation and repair of air conditioning apparatus (에어컨디셔닝 장치 설치 및 수리)			
37	Shoe repair (신발 수선)	Dis similar	25	Footwear (신발)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Repair of shoes (신발 수선) Cobbler services (구두 수선공 서비스) Boot repair (부츠 수선)			
40	Food processing (식품 가공)	Low similar	29	Meats (식육)
				등가 상품 (mere equivalents)
				Charcuterie (돼지고기 식품) Meat (식육)

“Similarity Tool”에 따르면, 37류 ‘에어컨 수리업’ 과 11류 ‘에어컨’ 및에 37류 ‘컴퓨터 수리업’ 과 09류 ‘컴퓨터’ 대해서는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고 37류 ‘신발 수선업’ 과 25류 ‘신발’ 도 비유사로 되어 있다. 40류에 대해서는 식품 가공업과 ‘meats’ 에 대해 유사성이 인정되나 ‘낮은 유사도(Low similar)’로 평가된다.

6. 소결

유사군 코드 활용 국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와 유사군 코드 비활용 국가 ‘미국, EUIPO’을 중심으로 ‘수리/수선업’과 ‘특수가공업’ 간 심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별 수리업 및 특수가공업-관련상품 건련검색 여부〉

국가	수리/수선업 및 특수가공업과 상품간 건련성	해설
우리나라	X	37류와 그에 해당하는 상품 건련검색하지 않음 40류와 그에 해당하는 상품 건련검색하지 않음
일본	X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사군코드 체계로 심사하 며, 37류와 40류에 대해 관련 상품 건련검색하 지 않음 43류 ‘커피전문점’ 과 30류 ‘커피’ 에 대해서도 건련검색하지 않음
중국	X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사군코드 체계로 심사하 며, 37류와 40류에 대해 관련 상품 건련검색하 지 않음 43류 ‘커피전문점’ 과 30류 ‘커피’ 에 대해서도 건련검색하지 않음
대만	X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사군코드 체계로 심사하 며, 37류와 40류에 대해 관련 상품 건련검색하 지 않음 43류 ‘식당업’ 에 대해서 30류 및 32류의 관련 상품들을 건련검색하도록 되어 있음
미국	X	Coordinated class에 따르면, 37류와 40류 모두 상품 및 도소매업과 건련검색 하지 않음.
EUIPO	△	Similarity Tool에 따르면, 37류 ‘에어컨 수리업’ 과 11류 ‘에어컨’ 및 37류 ‘컴퓨터 수리업’ 과 09류 ‘컴퓨터’ 대해서는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음

제3절 결론

지금까지 ‘수리/수선·가공업과 관련 상품(서비스)’간의 견련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리/수선업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는 7가지의 ‘수리/수선업’의 거래실태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각국의 상품심사 현황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거래실태를 보면 각 서비스업은 대부분 수리/수선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도 상품과 서비스가 완전히 상이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각국의 상품심사 현황에서도 유럽의 경우만 ‘37류 에어컨 수리업과 11류 에어컨’, ‘37류 컴퓨터 수리업과 09류 컴퓨터’에 대해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 일본/대만/중국/미국은 한국과 동일하게 견련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

‘특수 가공업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는 ‘특수 가공업’ 중 ‘커피 가공업’과 ‘식품 가공업’을 중심으로 거래실태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각국의 상품심사 현황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거래실태를 보면 ‘특수 가공업’을 제공하는 업체와 이를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구분되며, 각각의 수요자 및 제공 장소도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커피 가공업’의 경우 ‘43류 커피 전문점업’과도 같이 비교하였는데 이들 사이의 견련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도 ‘가공업’과 ‘도소매업’, ‘상품’간 대분류부터 완전히 구분하고 있다. 각국의 상품심사 현황에서도 유럽의 경우만 ‘40류 식품 가공업’과 ‘29류 식육’에 대해 낮은 유사도로 판단할 뿐, 일본/대만/중국/미국 모두 한국과 동일하게 견련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수선·가공업과 관련 상품(서비스)’간의 견련성은 낮은 정도라고 파악되며, 현행 상품심사 기준을 변경하여 견련관계로 볼 정도의 내용은 없다고 판단된다.

제4장 암호화폐 및 가상환경 상품명칭 연구

본 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신산업 분야의 상표등록출원과 융복합 지정상품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품심사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암호화폐 및 가상환경 관련 동향 및 상품(서비스) 상표등록출원 사례를 기준으로 용어의 정의, 지정상품 분류를 검토 및 분석하여 제공한다.

○가상서버(Virtual Server)

용어	해설			
가상서버 (Virtual Server)	클라우드 또는 오프사이트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며, 다른 가상 서버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공유함. 관리자는 가상 서버를 제어하여 호스트 시스템의 처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음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사이버보안 및 네트워크 분야 가상 서버 운영 및 서비스 제공용 소프트웨어를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업	○	42	S123301, G390802	-
가상 서버 운영 및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및 네트워크 분야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호스팅업	○	42	S123301, G390802	-

○가상세계(Virtual World)

용어	해설			
가상세계 (Virtual World)	컴퓨터로 구현한 현실 세계를 모의(模擬)하는 가상의 생활 환경.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지칭함.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가상세계(메타버스) 에서 광고대행업	○	35	S0101	* 가상상품 심사지침 개정 <23.07.24 상표심사 정책과> : '가상세계(Virtual World)' 대신 '가상 환경(virtual environment)' 명칭 권고. → 다만, 실제 출원에서는 아직 '가상세계'를 활 용한 명칭 다수 출원됨.
가상 상품이 기록된 가상세계용 컴퓨터 프로그램	○	09	G390802	

○가상자산(Virtual asset)

용어	해설			
가상자산 (virtual asset)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가상자산 거래소업	○	36	S0201	-
가상자산 거래용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노드(Nodes)

용어	해설			
노드 (Nodes)	노드는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탈중앙화된 장부에서의 활동을 검증하는데 도움을 주는 암호화폐 사용자와 그들의 장치를 말함.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 관리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서버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유지 및 관리. 여기서, 개개인의 서버, 즉 참여자를 노드라고 함.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풀 노드(full blockchain node), 머클트리만 가지고 있으면 라이트 노드(lightweight node)라고 함.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블록체인 서비스 상 에서 노드(node)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 벌컴퓨터망 접속제 공업	○	38	S0601	-
블록체인 노드용 컴 퓨터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용어	해설			
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token)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한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 가상자산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어, 게임, 예술품, 부동산, 디지털 콘텐츠 등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으로 사용.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s)으로 인증된 다운로드 가능한 디 지탈 파일	○	09	G510101, G520101, G5206	정식명칭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주조용 내려 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 케이션	○	09	G390802	정식명칭

○디앱 (DApp)

용어	해설			
디앱 (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 의 줄임말.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 즉, 블록체인 위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중앙에서 관리하는 중앙 서버가 없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블록체인 지갑을 보유하고, 이 지갑을 연결하여 사용.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사용자가 디지털 수집품/디지털 토큰/대체 불가능한 토큰(NFTs)/암호화폐 및 디지털 아트의 생성/구축/개발/발행/보기/나열/판매/교환 및 구매가 가능한 내려받기 불가능한 웹기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의 임시사용 제공업	X			*이유 : 명칭 불명확 *보정예시 : 사용자가 디지털 수집품/디지털 토큰/대체 불가능한 토큰(NFTs)/암호화폐 및 디지털 아트의 생성/구축/개발/발행/보기/나열/판매/교환 및 구매가 가능한 내려받기 불가능한 웹기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 소프트웨어의 임시사용 제공업/42류/S123301,G390802
분산 애플리케이션(DApp)분야에서 등록된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용어	해설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을 말함.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 모의시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음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디지털 트윈 기술 분야용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및 스마 트빌딩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	42	S123301, G390802	-

○디파이(DeFi)

용어	해설			
디파이 (DeFi)	탈중앙화를 뜻하는 'decentralize'와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의 합성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일컫는다. 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생태계.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디파이 분야 금융정보제공업	○	36	S0201	-

○메인넷(Mainnet)

용어	해설			
메인넷 (Mainnet)	메인넷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임. 이는 이더리움, 솔라나 등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에서 벗어나서, 해당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맞게 자체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것을 뜻하기도 함. 블록체인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자체 메인넷을 개발했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자신들 만의 네트워크를 개발했으며,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도 있음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블록체인 메인넷용 통신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블록체인 네트워크 메인넷	X	-	-	*이유 : 내용 불명확 *보정예시 : 블록체인 네트워크 메인넷용 통신 소프트웨어/G390802, 블록체인 네트워크 메인 넷용 통신네트워크/G390702

○블록체인(Blockchain)

용어	해설			
블록체인 (Blockchain)	디지털 통화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분산형 장부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 즉,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블록체인 관련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서비스형 블록체인업	X	-	-	*이유 : 블록체인업은 인정 불가능한 명칭임 *보정예시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형 플랫폼업 /42류/S123301,G390802 등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용어	해설			
스마트 계약 (smart contract)	블록체인과 더불어 빛을 본 자동화 계약 기술.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게 하는 프로그램.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계약용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	42	S123301, G390802	-
스마트계약 성사 및 실행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용어	해설			
스테이블 코인 (stable coin)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의 단점(높은 가격 변동성)을 해결하여 암호화폐를 전자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즉,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이란 뜻으로, 거래에 사용되기 위해 가치의 안정성을 가지는 코인을 의미.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할 때 쓰는 기축통화 역할.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디지털화폐/가상화폐/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디지털 토큰/암호화 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 지갑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스테이킹(Staking)

용어	해설			
스테이킹 (Staking)	일정 수량의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맡기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을 통한 블록 제안 및 검증용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가상통화 스테이킹 서비스업	X	-	-	*이유 : 불명확한 명칭임 *보정예시 : 스테이킹 방식의 가상통화 거래중개업/36류/S0201

○알트코인 (Alternative coin, Altcoin)

용어	해설			
알트코인 (Alternative coin, Altcoin)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코인.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의 범주에 속함. 알트코인은 보통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크고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음.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알트코인 채굴기 하드웨어	X	-	-	*이유 : 하드웨어의 구체적 내용 한정 필요 *보정예시 : 알트코인 채굴기용 컴퓨터 하드웨어/09류/G390803
내려받기 가능한 알트코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암호화폐 거래소(cryptocurrency exchange)

용어	해설			
암호화폐 거래소 (cryptocurrency exchange)	암호화폐를 법정화폐 혹은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 주식 거래소와 달리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없이 1일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인터넷으로 암호화폐를 거래 가능.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통화 취급 업소라는 용어를 사용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암호화폐 거래소업	○	36	S0201	-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관리용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암호화폐 지갑(Wallet)

용어	해설			
암호화폐 지갑 (Wallet)	암호화폐는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존재. 따라서, 실제 암호화폐 지갑에는 암호화폐가 들어있진 않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폐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기록을 인증하기 위한 키(key)를 관리하는 도구가 암호화폐 지갑.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면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 개인키를 타인이 관리한다면 수탁형(custodial) 지갑.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암호화폐 지갑	X	-	-	*이유 : 명칭 불명확. *보정예시 : 암호화폐 지갑용 컴퓨터 하드웨어 /09류/G390803, 암호화폐 지갑용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09류/G390802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X	-	-	*이유 : 명칭 불명확. *보정예시 : 암호화폐 지갑용 컴퓨터 하드웨어 /G390803

○에어드랍 (AirDrop)

용어	해설			
에어드랍 (AirDrop)	에어드랍이란 공중(Air)에서 떨어뜨린다(drop)는 뜻으로서, 기존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무상으로 코인이나 디지털자산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암호화폐 에어드랍 (암호화폐 활성화 를 위한 무상배포) 서비스업	X	-	-	*이유 : 서비스 내용 불명확 *보정예시 : 암호화폐 금융거래업(암호화폐 에어드랍 방식임)/36류/S0201
암호화폐 에어드랍 (암호화폐 활성화를 위한 무상배포)관련 정보제공업	X	-	-	*이유 : 서비스 내용 불명확 *보정예시 : 암호화폐 금융거래(암호화폐 에어드랍 방식임) 관련 정보제공업/36류/S0201

○오프체인(off-chain)

용어	해설			
오프체인 (off-chain)	블록체인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 중 하나로, 블록체인 밖에서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방식. 온체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짐.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디지털 및 가상 자산에서 저장 또는 파생된 온체인 및 오프체인 데이터와 분석정보의 수집/처리/분석용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온체인 (Onchain)

용어	해설			
온체인 (Onchain)	블록체인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 중 하나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송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 즉,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내역을 블록체인 위(On)에 기록하는 방식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디지털 및 가상 자산 에서 저장 또는 파 생된 온체인 및 오프체인 데이터와 분 석정보의 수집/처리/ 분석용 내려받기 가 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에 서 저장 또는 파생된 온체인 및 오프체인 데이터와 분석정보의 수집/처리/분석용 내 려받기 불가능한 소프 트웨어 온라인 제공업	○	42	S123301, G390802	-

○유동성 풀(Liquidity Pool)

용어	해설			
유동성 풀 (Liquidity Pool)	암호화폐 간 교환을 위해 암호화폐를 모아두는 곳.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지갑 또는 유동성 풀 접속용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용어	해설			
유틸리티 토큰 (Utility token)	독립적인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플랫폼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생성 및 관리되는 암호화폐. 특정 서비스 · 제품을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효용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암호화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암호화폐 및 유틸리 티 토큰용 소프트웨 어	○	09	G390802	-
디지털통화/가상통 화/디지털자산/블록 체인자산/디지털화 된자산/디지털토큰/ 암호토큰/유틸리티 토큰 거래 관리/입 증용 소프트웨어 개 발업	○	42	S123301, G390802	-

○인터랙션 디자인(interaction design)

용어	해설			
인터랙션 디자인 (interaction design)	인간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상호간 작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디자인분야임. 주로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을 디자인 하는 것으로 동적인 예술 전시물을 관람객과 상호작용하게 하는 예술인 인터랙티브 아트(인터랙션 디자인과는 다름) 혹은 미디어 아트와는 구분됨. 보다 좁게는 컴퓨터에 의해 작동되는 전자 제품, 시스템의 행동과 사용자의 행동간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이자 응용예술 분야임.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인터랙션 디자인	X	-	-	*이유 : 서비스업 불명확 *보정예시 : 인터랙션 방식의 소비자 제품 디자인업/42류/S121302
마케터들이 광고/마케팅/판매를 통해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계획/개별화/최적화/고객맞춤화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데이터/고객데이터/고객인터랙션 가공편집용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형 플랫폼업	○	42	S123301, G390802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용어	해설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임.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지도 생성용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등	○	9	G390802	정식명칭에 존재하는 명칭들임.

○지분증명(Proof of Stake)

용어	해설			
지분증명 (Proof of Stake)	암호화폐를 보유한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합의 알고리즘. 노드(node)가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권한을 분배하여 합의하고 보상을 분배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사용자들이 대체불 가능한 자산/디지털 자산/암호화폐를 교 환 및 거래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가능 하게 하는 지분증명 프로토콜을 바탕으 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분증명 성격 의 예금업	X	-	-	*이유 : 인정불가능한 예금업임 *보정예시 : 사용자들이 대체불가능한 자산/디 지털 자산/암호화폐를 교환 및 거래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지분증명 프로토콜 을 바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분증명 성 격의 예금을 위한 암호화폐 금융거래업/36류 /S0201

○코인(Coin)

용어	해설			
코인 (Coin)	코인은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메인넷 상에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 코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암호화폐도 코인에 속할 수 있음. 자체 프로토콜(protocol)인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다면 '코인'이고, 다른 플랫폼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것을 토큰이라고 함.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코인 채굴용 컴퓨터 하드웨어	○	09	G390803	-
코인처리시스템	X	-	-	*이유 : 시스템 내용 불명확. 구체적 한정 필요. *보정예시 : 코인처리시스템용 컴퓨터 하드웨어 /09류/G390803

○탈중앙화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

용어	해설			
탈중앙화 거래소 (Decentralized exchange)	중앙화된 주체가 거래의 중개자로 개입하지 않는 중개소. 거래가 시스템에 의해 즉각적으로 처리되고 중앙화 거래소보다 거래 비용도 저렴합니다. 중앙화된 주체가 암호화폐를 보관하거나 거래를 주관하지 않고 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화 문제에 있어 자유로움. 사용 방법이 복잡하며 초보자가 이용하기 어려움.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탈중앙화 거래소 관련 금융 분야 정보 제공업	○	36	S0201	-
추적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탈중앙화 거래소	X	-	-	*이유 : 구체적 상품으로 보정 필요 *보정예시 : 추적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탈중앙화 거래소 관련 데이터 처리용 소프트웨어/09류/G390802

○토큰(Token)

용어	해설			
토큰(Token)	토큰은 다른 코인의 메인넷 위에서 개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폐. 토큰은 주로 개별 블록체인 프로젝트 내에서 특정 액션에 대한 보상이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 또는 요금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출원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가상통화 및 디지털 토큰 거래관리용 컴 퓨터 소프트웨어	○	09	G390802	-
토큰 발행 및 회수 업	○			*정식명칭(36류/S0201) *다만, 정식명칭의 ‘토큰’ 과 여기서의 ‘토큰’은 그 내용이 상이하므로 실제 출원/심사 과정에 서 주의 필요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용어	해설			
퍼블릭 블록체인 (Public Blockchain)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블록체인.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거래를 기록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X	-	-	*이유 : 소프트웨어로 확정 불가능한 명칭임. *보정예시 : - 거래를 기록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용 소프트웨어/09류/G39082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의 임시사용 제공업	X	-	-	*이유 :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은 불명확. *보정예시 : - 내려받기 불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형 플랫폼 제공업/42류/S123301,G390802 - 내려받기 불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온라인 임시사용 제공업/42류/S123301,G390802, 등

○프라이빗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용어	해설			
프라이빗 블록체인 (Private Blockchain)	기관 또는 기업이 운영하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하나의 주체가 내부전산망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폐쇄형 블록체인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	42	S123301,G 390802	-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X	-	-	*이유 : 소프트웨어 용도 불명확. *보정예시 :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09류 /G390802, 등

○핫 월렛(Hot Wallet)

용어	해설			
핫 월렛 (Hot Wallet)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빠르고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지갑.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 키를 온라인에 연결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해킹 등 보안 문제에 취약.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개인 열쇠를 가지고 전자 지불 카드를 발행하여 보너스 및 보상 계획과 관련된 핫 월렛 즉 활성화된 지갑 발행업	X	-	-	*이유 : ‘발행업’ 으로 인정 불가능함 *보정예시 : 개인 열쇠를 가지고 전자 지불 카드를 발행하여 보너스 및 보상 계획과 관련된 핫 월렛을 이용한 암호화폐 금융거래업/36류 /S0201
개인 열쇠를 가지고 전자 지불 카드를 발행하여 보너스 및 보상 계획과 관련된 핫 월렛 즉 활성화된 전자지갑 결제서비스업	○	36	S0201	-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용어	해설			
확장현실 (eXtended Reality)	혼합현실(MR) 기술을 망라하는 초실감형 기술 및 서비스. 확장현실(XR)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MR)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임.			
지정상품 출원 사례				
상품명칭	인정 여부	니스 분류(안)	유사군 코드(안)	비고
XR(확장현실)영상기 기	X	-	-	*이유 : 구체적 명칭으로 한정 보정 *보정예시 : XR(확장현실)용 전자영상처리장치 /G390803, 등
확장현실(XR) 소프 트웨어	○	09	G390802	-

○ 기타 용어 (출원 예시가 없는 명칭)

용어	해설
블록 (block)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 거래내용 및 암호코드가 기록되어 있으며, 10분을 주기로 형성됨. 이 블록간 결합을 블록체인이라 함.
해시함수 (hash function)	임의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고정된 길이의 해시값을 출력하는 함수. 도출된 해시값은 중복될 가능성이 낮고, 결과 값으로 입력 값을 역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데이터의 오류나 변조를 탐지할 수 있는 무결성을 확인하는데 사용.
머클트리 (Merkle trees)	블록체인에서 블록 하나에 포함된 모든 거래 정보를 요약하여 트리(tree) 형태로 표현한 데이터 구조.
포크 (Fork)	한곳에서 분기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며,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을 말함. 주로 새로운 규칙, 신규 기능,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 업그레이드 할 때 사용함. 소프트 포크는
소프트포크 (Soft fork)	이전 버전과 호환 가능한 블록체인 업그레이드. 즉 소프트 포크는 기존의 규칙이나 기능에서 큰 틀이 바뀌지 않고, 부분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 사용
하드포크 (Hard fork)	이전 버전과 호환 불가능한 블록체인 업그레이드. 하드포크를 적용하면 이전 버전의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버전에서 개발, 채굴하던 사용자의 대다수가 업그레이드에 찬성해야 적용할 수 있다. 즉, 프로토콜 자체가 변경될 때 주로 사용.

중앙화 거래소 (Centralized Exchange)	중앙화된 주체가 거래의 중개자로 개입하는 거래소. 이용이 쉽고 번거로움이 덜하므로 많이 사용됨. 전통적인 주식 거래는 권한과 기능이 분산됐지만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모든 기능을 관장. 따라서 상장 관련 논란을 야기하거나 고객 자금 유용 및 횡령, 내부자 정보 이용 등의 투명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주요업체 :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샤딩 (sharding)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저장하는 기술. 즉,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수평 분할(horizontal partitioning)하여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곳에 분산 저장 및 조회하는 것.
세그윗 (segwit)	암호화폐의 거래가 급증에 따른 블록의 생성 속도와 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즉, 블록체인의 외부에서 거래량의 일부를 처리하는 방법.
플라즈마 (plasma)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확장성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블록체인 기록을 최소화하는 기술. 하나의 상위 블록체인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여러 개의 하위 블록체인으로 업무를 분배해 전체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고래 (Whale)	가상자산 업계에서 대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이들은 가상자산 보유량이 매우 많아 대량매수·매도를 통해 시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됨.
퍼드 (FUD)	퍼드란 Fear(공포), Uncertainty(불확실), Doubt(의심)의 합성어.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짜 뉴스나 악재, 근거 없는 소문 등을 모두 퍼드로 규정.
포모 (FOMO)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 나 혼자 모르면 소외감을 느끼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심리. FOMO(fearing of missing out,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리,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증후군임.
밈 코인 (Meme-coin)	'코인'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통용되는 용어일 뿐, 개념적으로는 대부분 토큰에 속함. 인터넷과 SNS에서 밈이나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발행된 암호화폐로, 기술력과 로드맵 보다는 커뮤니티 영향력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특징.
거버넌스 토큰 (Governance Token)	탈중앙화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시스템 개선안,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제의하고 투표하는 데 사용하는 암호화폐.
콜드 월렛 (Cold Wallet)	인터넷이 차단된 하드웨어 장치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며, 상대적으로 보안이 뛰어난 지갑. 인터넷이 차단된 하드웨어 장치에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개인 키를 오프라인에서 처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 더 안전하나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
작업증명 (Proof-of-Work)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Network)의 유지를 위해 블록의 생성 및 연결 방식을 통해 거래를 기록하고 검증하는 방식의 하나로써, 직접 일(작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 (예:비트코인이란 네트워크가 유지되게끔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을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

유동성 공급자 (Liquidity Provider)	유동성 풀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쌍의 토큰을 맡겨 공급하는 시장 참가자.
브릿지 (bridge)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고 블록체인 간에 정보와 자산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오 (DAO)	기존의 중앙 시스템이나 조직 단체와 달리, 분산화된 탈중앙화 자율 조직. DAO는 상하 조직 개념 없이 공통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해진 규약, 프로토콜에 따라 투명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공정한 보상을 받는 구조를 구축
반감기 (Halving)	반감기는 암호화폐 채굴 보상량이 조절되는 메커니즘. 즉, 비트코인의 채굴량(=작업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반감기의 목적은 코인의 발행량을 제한하여 유통량을 조절하기 위함.

제5장 총평

지금까지 상품 유사 판단에 혼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품(서비스)의 견련성을 살펴 보고, 암호화폐, 가상환경 등 신규융복합 관련 주요 명칭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전문의류’와 ‘스포츠용구’는 ‘스포츠’를 기준으로 분류되고 일부 국가에서 견련검색을 최소 필요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정 스포츠에 특화된 전문의류는 해당 스포츠용구와 유사대비를 할 수 있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양 상품은 ‘의류’와 ‘용구’라는 본질적 속성이 상이하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스포츠 일반의류’와 ‘통상의류’는 ‘의류’라는 상품 속성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 전문의류’는 특정 스포츠에서 착용하는 특수형태이나, ‘스포츠 일반의류’는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서는 평상시 착용 가능한 일상복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스포츠 일반의류’를 ‘통상의류’와 견련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유사상품 심사기준은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셋째, ‘수리/수선·가공업과 관련 상품(서비스)’에서, 수리/수선업은 전문업체 혹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업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특수 가공업’도 상품 대비 제공업체, 판매업체, 수요자 및 제공장소도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도 ‘가공업’과 ‘도소매업’, ‘상품’을 구분하고 있고 일본, 대만 등에서도 견련관계로 보는 경향이 높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수선·가공업과 관련 상품(서비스)’간의 견련성은 낮은 정도라고 파악된다.

넷째, 사용이 빈번한 암호화폐 및 가상환경 용어를 선정하고 개념을 정리하였고 이들이 포함된 실제 출원 명칭 사례를 조사하고 분류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상품 심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명확한 유사판단이 어려운 상품, 서비스의 견련관계를 파악하고 거래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명확한 권리범위 확인 및 편의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